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이 교재는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를 중심으로 제작한 사이버인권 교육과정 〈이주민과 인권〉의 학습내용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저작권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원저자와 공유하고 있으므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주민과 인권〉 사이버인권교육을 수강할 때 보조교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제1강 인권의 이해	1
생각해 보기	3
1. 인권의 개념	4
2. 인권의 특성	5
3. 인권의 내용	6
4. 국가인권위원회	9
다시 생각해 보기	11
문제 풀기	12
정리하기	13
제2강 다문화와 이주민의 인권	15
생각해 보기	17
1. 국제 이주의 역사	18
2. 다문화의 개념	19
3.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23
4.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모색을 위한 개선방안	24
다시 생각해 보기	26
문제 풀기	27
정리하기	28
제3강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29
생각해 보기	31
1. 인종	32
2.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32

3. 인종차별철폐협약	34
4. 주요국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35
5. 한국사회와 인종차별	36
다시 생각해 보기	41
문제 풀기	42
정리하기	43

제4강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정책 45

생각해 보기	47
1. 이주민 인권을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원칙과 체계	48
2. 이주민 관련 국내법과 정책	50
다시 생각해 보기	56
문제 풀기	57
정리하기	58

제5강 이주민과 기업 59

생각해 보기	61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	62
2. 고용허가제와 기업의 인권경영	62
다시 생각해 보기	70
문제 풀기	71
정리하기	72

제6강 미등록 이주민과 출입국 관리 73

생각해 보기	75
1.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	76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7
다시 생각해 보기	86

문제 풀기 87
 정리하기 88

제7강 외국인보호시설과 강제퇴거 89

생각해 보기 91
 1. 외국인 보호 시설 92
 2. 강제퇴거 97
 다시 생각해 보기 101
 문제 풀기 102
 정리하기 103

제8강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105

생각해 보기 107
 1. 난민과 무국적자의 개념 108
 2. 난민과 무국적자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 109
 3.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 113
 4.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 115
 다시 생각해 보기 120
 문제 풀기 121
 정리하기 122

제9강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123

생각해 보기 125
 1. 결혼이주민의 현황 126
 2. 국제결혼과 여성이주민의 인권침해 126
 3. 관련 진정사례 130
 다시 생각해 보기 132
 문제 풀기 133
 정리하기 134

제10강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과 인권	135
생각해 보기	137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138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139
3.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145
다시 생각해 보기	147
문제 풀기	148
정리하기	149
제11강 재외동포와 인권	151
생각해 보기	153
1.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사	154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법령 및 제외국의 사례	156
3. 진정사례	160
다시 생각해 보기	165
문제 풀기	166
정리하기	167
제12강 이주민과 행정	169
생각해 보기	171
1.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172
2. 단일문화 근거들의 행정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173
3. 진정사례	176
다시 생각해 보기	187
문제 풀기	188
정리하기	189

제13강 이주민과 사회보장	191
생각해 보기	193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법적 근거	194
2. 이주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195
3. 이주민의 사회보장체계	197
다시 생각해 보기	201
문제 풀기	202
정리하기	203
제14강 다문화 인권교육	205
생각해 보기	207
1.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념	208
2. 다문화 인권교육의 국내외 사례	212
3. 바람직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향	215
다시 생각해 보기	218
문제 풀기	219
정리하기	220
제15강 권리구제 제도	221
생각해 보기	223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224
2.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제도	226
3.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226
다시 생각해 보기	229
문제 풀기	230
정리하기	231

제1강

인권의 이해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특성
3. 인권의 내용
4. 국가인권위원회

제1강

인권의 이해



생각해 보기

인권이란 무엇인지 적어본다.



예시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람으로 살기 위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보편적 자유와 평등에 기반하는 것이다.

학습목표

- 인권의 개념, 특성,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인권의 개념
- 인권의 특성
- 인권의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가.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로 사람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나. 인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은 특정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변하고 발전해 왔다. 인권은 모든 문화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사상’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사상은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18세기 시민혁명, 19세기 계급 혁명을 거치면서 현대의 인권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은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격상되며 인권의 국제화를 이룩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인권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 국내외 규범에서 인권의 정의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여 인권이 자유와 평등임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기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서, 동일하게 중점을 두고 인권을 다뤄야 하며, 국가적 또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의미도 감안해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즉, 인권의 특성이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명시한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은 특정한 범주의 인권을 부인하거나 우위로 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가.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종교, 언어, 국적, 연령, 성적 지향, 장애 기타 어떠한 특징과도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모든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나.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각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생명권과 의식주의 권리는 각각 떼어낼 수 없다. 또한 전지구상에서 모든 인권은 동일한 기반에 근거하고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의 인권들이 다른 인권들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

다. 인권의 상호의존성

모든 인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어느 인권의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고, 어느 인권의 실현은 다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은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전제 조건이면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향유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전제로 한

다. 예컨대 사회복지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복지권과 공정한 재판권은 서로 연관된 권리로서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라. 인권의 의무와 책임성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특성이 존재한다. 바로 ‘인권은 의무와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여, 인권의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반대에 있는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권은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 둘째,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계, 셋째, 공공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다.

3

인권의 내용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인권내용들은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과 지역인권협약을 통해 구체화되고 발전적으로 확장되었다. 인권은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정치적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인권은 단순한 부작위의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들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까지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권의 내용은 산업, 과학기술, 인권사상, 국제인권법 등의 발전과정을 통해 계속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연대권, 평화권, 발전권 등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신체적 안녕과 정신적 안녕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생명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나 노역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가정 그리고 통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절차에 참여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각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제적 권리에는 적당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적당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당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이 있다. 사회적 권리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에 대한 보호, 아동의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적 권리에는 교육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등이 있다.

다. 평등과 비차별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권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모든' 인권의 평등한 실현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차별의 유형들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차별의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하는가의 문제보다는,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과 근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집단,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집단, 개인의 모든 인권이나 일부 인권의 향유를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 직접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유로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접차별은 표면상의 법과 정책 등의 목적이 차별적인 것보다는 법과 정책 등의 효과가 차별적일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실적 또는 법적 차등 대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때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것의 증명책임은 그 행위자에게 있다. 따라서 일부 소수자 집단을 위한 우대나 특정상황에서의 다른 대우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성, 외국인, 무국적자, 난민,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피구금자 등과 같이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집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규범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특정 집단에게 인정하는 인권이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집단의 취약성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의 역사와 같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우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만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별해소를 위한 임시 특별조치가 있다. 이는 과거 차별의 장기적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총회 권고에서 정의한 특별 조치에서는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 우선적 처우, 대상할당 채용, 고용 및 승진, 시한을 정한 수치 목표, 할당제 등 구체조치 또는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광범위한 입법, 진행, 행정 및 기타 규제적 규범, 정책 및 실행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집단적 권리

집단적 권리는 집단이 향유하는 집단적 권리, 사회구성원간의 연대를 기초로 하는 집단의 권리이다. 연대권, 평화권, 발전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을 포함하며,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청구할 권리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결에 대한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재산 및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기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 기타 선주민의 권리가 있으며,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청구할 권리 등이 있다.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했으며, 민주화의 성과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보편적인 준거들을 마련했으며, 1993년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위상은 정치적 공약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 목적으로 격상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국가기구, 준 국제기구, 독립적인 국가기관, 준사법기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종합적 인권전담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전반, 즉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인권 주류화의 중심기구로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확산을 통한 인권 감수성 증대와 인권문화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준 국제기구

준 국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과 국내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국제 인권기준의 발전이라는 쌍방향의 과정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형식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기구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다룬다. 유엔의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국내의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인권정책을 시행하는 단순한 행정기구와는 구분된다.

3) 독립적인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며,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이 절충과 타협에 의한 남용이 아닌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993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인권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4) 준 사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실정법에 근거한 국내 사법제도와 달리 준사법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간편한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인권보장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생각해 보기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 지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 인권 규범과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간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의 범주와 목록에서 발생하는 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 제도,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문제 풀기

1.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특정 국가 국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O , X)

○ 정답 : O

○ 해설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에서 만들었다. 유엔은 국가들의 연합(United Nations)이지만 세계인권선언의 표기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그것은 인권이 특정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의 권리임을 뜻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2.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무제약성을 갖는다. (O , X)

○ 정답 : X

○ 해설 : 인권은 의무와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인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이 인권침해적인 권리, 성차별적인 권리, 아동학대적인 권리를 정당화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 행사의 제약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며 행정부 소속이다. (O , X)

○ 정답 : X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 1991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 기구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며,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행위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구’이다.



정리하기

- ◆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며,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 ◆ 인권은 도덕적 가치를 넘어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외 규범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의무와 책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의 발전은 인권 내용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 ◆ 인권의 내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 그리고 최근엔 연대권, 발전권 등의 집단의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이며,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 국제기구이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며,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행위를 수행하는 '준 사법기구'이다.

제2강

다문화와 이주민의 인권



1. 국제 이주의 역사
2. 다문화의 개념
3.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4.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모색을 위한 개선방안

제2강

다문화와 이주민의 인권



생각해 보기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 지 적어본다.



예시

다문화주의가 빠른 시간에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주민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회적, 상징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이주민 인권 상황의 심각성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대부분이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학습목표

- 국제이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
- 다문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다
-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모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제이주의 역사
- 다문화의 개념
-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모색을 위한 개선방안

가. 국제 이주의 역사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발생시킨 국제이주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이주는 노동력의 이주로 발생했으며, 노동력이주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예 등 강제 이동, 자유이동이 있다. 먼저, 강제이동은 식민지 개발로 인해 노예노동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었다. 식민지를 개발하면서 유럽 상인자본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필요한 노동력을 유럽에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원주민의 수 또한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 이에 18세기까지 아프리카인을 주로 매매하는 노예무역이 보편화되었고, 19세기 중반까지 번창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대량 이동시킨 노예제도는 유럽의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쇠퇴하고, 1863년 미국의 노예해방선언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 '콜리'라고 불리는 인도인과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들은 유럽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인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국가가 식민지화되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상당수는 식민모국으로 유입되었고, 징용이라는 방법으로 동원되어 장거리 이동되었다.

이후 노동력의 자유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했으나, 인구증가율은 그보다 더 높아 과잉인구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이민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공업화의 진행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한 서유럽과 농장근로인력이 필요했던 미국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주기적·계절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마다 노동인구가 부족하여 이주노동자 고용을 고려했고, 유럽 선진공업국들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후 발생한 오일쇼크는 유럽의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규제한 반면, 중동 산유국에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동 국가들이 유가의 급등으로 얻은 부로 각종 사회간접자본과 공장을 건설하는 등 경제를 일으키면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였다. 중동 다음 신흥산업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자국 산업의 수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된다.

나. 국제 이주의 결과

현재도 국제이주는 개인이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고용 등의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이주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이주민이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인종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주민의 가족은 고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준 및 국내 노동법상의 권리침해를 당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또한, 이주민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인종, 언어, 생활 풍습과 문화가 달라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실업이 만연하는 등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를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 긴장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입국들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다문화’의 인정이다.

2 다문화의 개념

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주의를 구분하고, 다문화 사회를 외국인들만의 사회로 협소하게 개념화하는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란 “정치적 신념, 하위 문화, 다양한 지역 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를 일컫는 기술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이동과 흐름이 일상화된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마르티니엘로라는 학자는 “단일문화적 사회와 다문화적 사회의 구별은 신화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모든 인간사회는 다문화적이며 단지 그 방식이 모두 다를 뿐이다”라고 했다.

다문화주의란, 사회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치적 지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규범적 용어이며, 이념, 제도, 시민사회적 관행, 시장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층위의 지평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구화에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로써 우리나라는 분명한 다문화 사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떤 유형의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또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듯 다문화주의가 논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평등과 차이”의 공약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나. 다문화에 대한 오해 세 가지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는 동화주의, 다원적 단일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가 있다.

1) 동화주의

이주민을 포함한 문화적 소수자가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청하는 이념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프랑스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은 프랑스의 국가 이념과 문화를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프랑스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화주의에서 이주민 소수자의 고유한 문화는 금기의 대상이지 권장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는 히잡이나 부르카와 같은 고유한 의상의 착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의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배적인 내용이 ‘한국어 교육’ 과 ‘한국 문화 체험’ 이라는 점에서 동화주의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동화주의는 이주민 소수자를 “추방과 격리”의 대상으로 이단시하는 배타주의 이념에 견주어 통합과 선별을 우선시한 점으로 보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통합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이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주류 사회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다문화주의와는 다르다.

2) 다원적 단일문화주의

다문화를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단일문화’들 사이의 상호 관용과 공존의 규범 정도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태도를 뜻한다.

다문화 축제 현장에서 목격되는 익숙한 풍경인 동일한 공간 안에 만국기가 휘날리거나 독립된 국가 부스들이 설치되어 각 나라의 전통 문화 아이тем들이 전시되어 있는 풍경이

바로 다원적 단일문화주의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다원적 단일문화주의는 특정한 문화와 그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고정불변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이렇듯 문화와 민족의 고정불변이라는 신념에 근거한 다원적 단일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화 및 문화향유자간의 위계와 경계를 고착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반면, 다문화주의적인 맥락에서 문화는 그 자체로 생성적이며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는 폐쇄적인 전통 문화들의 병렬이 아니라 탈 전통적인 공동체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반다문화주의

다문화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화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인종주의가 있다. 이들 중 공화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등은 다문화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지만, 인종주의는 다문화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공화주의는 국가공동체가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이유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다문화를 비판한다. 그리고 급진주의는 다문화가 신자유주의적인 불평등을 은폐하는 상부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는 다문화사회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국가, 사회와 문화 주체들이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거나 수용하지는 않는다. 스웨덴의 이민자 집단, 호주의 애머리진, 퀘벡의 프랑스인, 미얀마의 소수 민족 등은 비슷한 이유로 다문화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자신들의 위상이 다문화주의에 의해 다른 이주민들과 동일한 것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인종주의자들은 다문화사회라는 현실성 자체를 부정한다. 그 심각성은 문화적 무지, 편견과 고정관념, 정치 세력화를 통해 인종주의는 ‘중요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준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다문화 주의의 세 가지 키워드

다문화주의의 과제는 다문화주의가 전통적인 정치 철학을 넘어 차이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공약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다수자와 소수자, 시민과 이주민, 국민과 비국민 사이에 정치, 사회, 문화적 배제와 동화의 강제성이 자기결정성에 기초한 상호 포용이 용인되고 장려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즉, 개념화된 다문화 사회를 추구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인권, 차이,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1) 인권

평등과 차이의 조화를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인권 개념인데,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거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흔히 출신 국가의 차이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문화나 차이 또는 정체성'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다문화화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권을 위반하는 문화는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에 해당하는 반인권 문화, 반여성 문화, 반이동 문화, 폭력 문화, 착취 문화, 증오 문화, 인종주의 문화 등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다.

2) 차이의 인정

차이 혹은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은 다문화주의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키워드이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 샴프리니 교수는 "다문화주의는 근대성을 향해 차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각 국가의 개별성을 뛰어넘어, 현대 사회 전체의 문명에 대해 놀랄만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이라는 국가 단위의 개념과 다문화주의적인 맥락에서 다양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문화다양성 개념이 특정한 국가 문화의 실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문화주의 개념에서는 '디베르수스' 곧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차이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적인 다양성은 이미 완전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경계를 미끄러지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가 다양성지향적인 다문화주의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주민과 선주민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의 주체들을 관리와 통제, 동화와 관용의 대상이 아닌 창조와 변혁의 주체로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수자

행위자이자 주체로서의 소수자는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평등과 차이를 매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으로 소수자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의 양대 국가 체제 모두로부터 포용되지 못했던 “근대 국가 체제 내부에 거주하는 외부인들”이자, 정치적 성원권과 문화적 소속감의 일치를 강요했던 근대 민족국가 체제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주류 사회에 포용하는 과제를 간과한 채, 이주민 소수자의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우리나라는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민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유권에는 생명권, 고문의 금지, 노예제도의 금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다음으로, 평등권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력 등에 의해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권에는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임산부·어린이 보호, 의식주 생활을 누릴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과학·예술 활동의 권리 등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국제 사회는 한국의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80차례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가운데 긍정은 12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인권협약감시기구들은 대한민국 이주민 인권에 대해 권고했다. 우려와 권고가 가장 집중된 대상이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결혼이주민, 난민의 순서이며, 이주민에 대한 강제근로, 인신매매, 불공정한 사회보장 등을 우려하고 그 개선을 권고했다.

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인권친화적인 다문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는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라는 총체적인 삶의 문제이며,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반인권 침해적인 문화를 인권친화적인 문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제도 및 사회적인 개선 방안

제도 및 사회적인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많은 이주민 소수자들은 불평등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제도 자체에서 배제된 이주민 대중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제 문제 또한 사라져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포용의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제도와 인프라 구축의 효과는 미지수이고, 관련 제도의 확장이 이주민 소수자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공정한 다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포용과 별개로 상징적 차별이 여전히 자행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반편견

다문화에 대한 편견의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들로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 만족도와 신뢰도는 한국인 가족보다 낮을 것이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높을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의 범죄율은 등록 이주민 보다 높을 것이다.’,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범죄의 발생률이 낮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학력은 매우 낮을 것이다.’, ‘네팔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은 영어를 못할 것이다.’, ‘아시아계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5대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등이 있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어린이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다문화사회를 외국인들만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다문화주의를 일방적인 복지의 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다문화와 사회적 약자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민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적어본다.



예시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인권 규범과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간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의 범주와 목록에서 발생하는 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 제도,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집합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문제 풀기

1. 다문화주의란 사회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치적 지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규범적 용어이다. (O , X)
 - 정답 : ○
 - 해설 :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차이는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동화주의가 이주민과 문화적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준과 자격, 통합의 사회적 위치 등을 전적으로 주류 사회가 제시하고 결정하는데 반해, 다문화주의는 그러한 결정권을 당사자들이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2.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주류문화에 일방적으로 통합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민이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주류 사회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다문화 주의와 구분된다. (O , X)
 - 정답 : ○
 - 해설 : 동화주의는 이주민을 포함한 문화적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청하는 이념으로,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금지하기도 한다.

3.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한국의 이주민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의제는 강제근로, 인신매매, 불공정한 사회보장 등이다. (O , X)
 - 정답 : ○
 - 해설 : 국제 사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 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 등으로 인해 강제 근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며, 불법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주아동 및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공정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기

- ◆ 형태는 노예 등의 강제 이동에서 자유이동으로 변형되었고, 국제이동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를 인정하는 정책들이 등장했다.
- ◆ 다문화사회란 정치적 신념, 하위 문화, 다양한 지역 문화 등 삶의 각 영역에서 다원성이 혼재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용어이며, 다문화주의는 사회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치적 지향과 태도를 의미하는 규범적 용어이다.
- ◆ 동화주의, 다원적 단일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다.
- ◆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권, 차이,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도적 보완, 사회적 배제의 배제, 정치적으로 공정한 다문화, 반편견 교육 등이 요청된다.

제3강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1. 인종
2.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3. 인종차별철폐협약
4. 주요국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5. 한국사회와 인종차별

제3강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본다.



예시

우리나라에서도 인종비하적인 언어, 백인 우대나 유색인 하대행위 등 인종차별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안티 카페 활동 등 외국인 혐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가, 사회, 사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주민에게 투사하여 자신은 이주민에게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행동을 할 자격이 있고, 이주민은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릇된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방해하여 결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3강

외국인
차별
혐오
과

학습목표

- 인종,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 인종
-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 인종차별철폐협약
- 주요국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 한국사회와 인종차별

1

인종

인종이란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말한다.

인종과 관련된 사건으로, 1983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법원에서 백인을 판정했던 사건이 있다. 이 백인 판정사건은 수지 길로이 팝스라는 백인 여성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당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인종을 표시해야 했는데, 이 여성은 출생기록소에는 '흑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백인'이라고 표기했으므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은 자신은 물론 부모, 친가, 외가의 조부모 등 모든 친척들이 전부 백인이었기 때문에 출생기록소의 기록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출생기록소에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록소측은 이 기록이 정확하다며 정정 요구를 거부했다.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이 여성이 흑인이 맞다고 판결했다. 당시 루이지애나 법에 따르면 누구나 최소 32분의 1이상 흑인 피가 섞였다면 그 사람을 흑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더 머나먼 흑인 조상 때문에 흑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32분의 1이 흑인이라면 직계 조상 32명 가운데 나머지 31명이 백인이라 하더라도 오직 한 명의 흑인만으로 흑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 부른다.

이 사건은 인종의 구분은 반드시 신체적 특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구분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

2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가.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란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나아가 사람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이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며, 보다 확장되면 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어쩔 수 없거나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주로 유럽국가와 식민지 경영에 토대를 둔 제국주의 시대에 발생했으며,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 우월주의라는 편견 하에 타인종 배척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람의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인종주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사람의 선천적인 특징을 기초로 하여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인종주의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주의는 나와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타자화라는 과정을 통해 '다름'은 '부정적'이라는 낙인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종주의는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여 외국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인종주의와 달리 외국인 혐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인의 공급을 위해 이주민에 대해 국경을 개방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인종적 면을 포함하여 나와 다른 민족적·국가적·문화적·신체적 특징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말한다.

인종주의와 외국인 차별 개념의 차이는 인종주의가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정서나 의식인 반면, 외국인 혐오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민족, 인종에 대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관계없이 이질성에 바탕을 둔 정서나 의식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 혐오는 공동체의 유지나 자기보존을 위해 이방인을 배제하거나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에 커다란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나.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 사례

1) 인도인 후세인씨 사건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던 인도인 후세인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후세인씨는 한국인 친구와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양복차림의 박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후세인씨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더러워! 이 더러운 자식! 너는 어디서 왔어? 냄새 나는 놈 같으니. 너는 아랍사람이구나! 아랍! 아랍!” 그러자 후세인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 한씨가 박씨에게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박씨는 “넌 뭐야? 넌 조선인이야? 조선인이 흑인이랑 같이 있으니 좋으냐?” 라며 한씨를 발로 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이들은 박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던 경찰은 후세인씨가 교수 신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말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갔다. 또한 경찰은 박씨와 한씨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으나 후세인씨에게는 반말을 사용했다.

이 사건에서 한국인 박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 남성의 어두운 피부색은 곧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피부색이라는 신체적 특징을 비위생적 더러움이나 냄새로 표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경찰은 어두운 피부색은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이 남성이 교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았다. 또한 이 인도인 남성에게 반말로 응대한 것은 모두 인종주의적인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2) 일본 미등록 이주민 익명신고 웹사이트

2004년 2월 일본 출입국 관리국은 시민들 누구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이메일로 익명신고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특별보고관은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에 관한 이러한 일본의 제도가 인종 프로파일링과 외국인 혐오를 정부가 직접 선동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사실 민간인 신분의 시민들이 이주민에게 직접 국적이나 체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인지를 추측하는 방법이 인종이나 언어적 특성에 기초한 외국인 외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인종차별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인도인 교수 보노짓 후세인씨가 겪은 사건처럼 민간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국가정책 자체가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름과 함께 형사범처럼 대하는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은 인종차별이 야기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일찍이 인식하

고, 1966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3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6개국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인종차별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고하고 심의 받아야 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협약은 인종뿐만 아니라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까지 차별의 근거를 확장하고, 차별의 행위도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기구는 우리나라에 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4 주요국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가. 영국

영국은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통해 급속하게 대규모의 외국인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존재했다. 또한, 1958년 인종폭동을 계기로 이민억제정책을 집행하여 이민을 규제하고 정치적 난민의 유입을 통제했다. 결국, 1965년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종차별억제정책을 실시하고, 1976년 인종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1970년 초반까지 개방적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동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후 동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체류자격의 억제 방향으로 법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4년 「이민법」은 이민자들에 대해 영구 정착을 규정하여 3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모든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유효기간 10년의 장기 체류증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했다. 이 법으로 1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5 한국사회와 인종차별

가. 인종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

1) 외국인 음식점 출입 거부(인권위 2007. 9. 11. 07진차525 결정)

K씨 :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태원동 소재의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점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보여주었는데 그 직원이 아프리카인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인이어서 출입을 거부하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음식점 주인 : 우리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상 손해를 준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인종을 이유로 출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 저도 나이지리아인입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부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서있던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미국 국적인 부인의 경우에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의 출입은 막았습니다. 직원은 최근 영업장 내에서 나이지리아인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음식점 주인은 나이지리아인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했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모든 나이지리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은 나이지리아인 모두를 잠재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며, 편견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지리아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프리카인 또는 나이지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것은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

위라고 판단했다.

2)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인권위 2011. 11. 25. 11진정0575700 결정)

Y씨가 사우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외모가 에이즈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금지당했다는 사건이다.

사우나 대표 : 개업할 때부터 동네 주민들이 외국인을 받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출입시키지 않고 있죠. 에이즈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장 바로 앞쪽이 성매매 집결지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외국인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출입을 허용하면 오히려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서 거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을 보상에 주지 않는 한 향후에도 외국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인 경찰 : 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출동하니 사우나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텍사스촌 에이즈 문제도 있고, 내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같이 목욕하는 것을 싫어해서 출입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상 시설운영자로서 손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손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에이즈가 목욕장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에이즈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공중서비스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의 용모나, 에이즈 감염 염려, 내국인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나.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2013년 7월 「내일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83.7%로 높았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혜택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노동계약을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94.1%, 의료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은 93.3%, 고충 상담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견도 94.3%로 많았다. 반면에, 조사 응답자의 과반인 57.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노동자라는 온정주의적 태도를 갖는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 집단을 어딘지 모르게 위협한 집단이라고 인식한다는 이중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 미디어와 인종차별

여러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중 정작 이주민과 직접 접촉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이주민과의 직접 만남이 아닌 미디어를 통해 이주민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문, TV, 인터넷, SNS와 같은 매체는 현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선보이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현실을 일반 시청자들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주민에 대해 보여준다면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인식 또는 긍정적 인식으로 심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주민에 대한 표현 수준을 살피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4조에 근거하여 인종적 우월성, 증오감, 비하 또는 인종차별을 정당화시키거나 부추기는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 4개사와 종합편성방송 4개 채널에서 방송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인종적·문화적 선입견과 편견 노출,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사생활 침해,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나타났다.

1) 인종적·문화적 선입견 및 편견 노출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의 일부는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희화적·비하적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국가 및 이주민 외국인이 속한 인종 문화 지역에 대해 왜곡

된 편견과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사회자가 어두운 스튜디오에 앉아 있던 출연자의 피부색을 빗대어 “저는 사람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라고 하거나, 외국 서커스팀이 쌍철봉으로 묘기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이를 ‘인간원숭이들 바나나 따기’ 라고 자막처리하고 있었다.

2) 고정관념 조장 및 한국문화의 지나친 강조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계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조장하고, 이주민을 소수자적 지위로 전제하거나, 부부간 나이 차이가 많고, 가무잡잡한 피부색이라는 표현으로 일반화·정형화하여 이주민의 외모와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고착화했다. 또한 이주여성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산낙지와 삭힌 홍어, 개고기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고 하는 등, 특정 한국음식에 대한 수용을 당연히 요구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검증요소로 보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3) 흥미에 치중한 과도한 표현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자가 외국인 출연자에게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욕이라며, “무슨 욕을 할 줄 아냐?”는 질문을 하거나, 그 국가에서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의 소수 사례를 일반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인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이주민의 관련성을 강조했으며,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 사용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4)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로 방송목적을 넘어선 정보 노출이 빈번했다. 그 사례로는 리틀싸이군에 대한 악성인터넷 게시물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여 노출시키고, 농사일을 하는 이주여성에게 “몸무게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하거나, 이주여성의 신체를 만지면서 “예쁘다, 뽀야니, 모가지도 잘록하고, 체형도 좋고, 다리도 쪽 빠지고” 라며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훈훈한 인심으로 표현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5) 차별적 용어 사용

검은 머리 외국인, 푸른 눈 외국인 등 신체 특정 부분의 색깔을 인종이나 민족 등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내국인을 토종이라고 지칭하는 등 인종적, 민족적, 지역적, 국가적 차별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방송에서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주민의 발전적이고 순조로운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 4개 방송사 및 4개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텔레비전 방송 심의 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크레파스 색상 중 '살색'은 차별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생각을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reflections on the '살색' (sal-saek) color in Crayons.



예시

크레파스 색명을 결정하는 한국기술표준원이나 크레파스 제조사가 살색이라는 색명을 사용할 때 특정 인종을 차별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색이라는 고유명사가 일반인에게 특정 인종의 피부색임을 강조하고, 그 밖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을 차별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파스에 사용되는 색명인 살색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면 이는 시정이 필요하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 2002.7.31. 01진차3 결정 참조)



문제 풀기

1.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는 같은 개념이다. (O, X)
 - 정답 : X
 - 해설 : 인종주의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며, 외국인 혐오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관계없이 이질성을 근거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의식이다.
2. 우리나라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UN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에서 법적효력이 없다. (O, X)
 - 정답 : X
 - 해설 : 우리나라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1978년 12월 5일 가입했으며, 1979년 1월 4일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3. 한 야구선수가 인터뷰에서 “타격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흑인 출신 투수를 꼽으며 “그의 피부색이 까매서 마운드에서 웃을 때 하얀 이와 공이 겹치기 때문에 타격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이러한 야구선수의 발언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O, X)
 - 정답 : O
 - 해설 : 어떤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희화화하는 발언. 그 발언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정리하기

- ◆ 인종이란 신체적 특성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을 말하며 과학이 아닌 사회가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구분한 집단을 말한다.
- ◆ 인종주의란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대개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며 인종간의 차별은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하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
- ◆ 외국인 혐오는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하는 인종적·민족적 혐오증을 의미하며 공동체 유지나 자기보존을 위해 이방인을 배제하거나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보고 있다.
- ◆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일반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인 만남보다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수용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디어와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4강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정책

1. 이주민 인권을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원칙과 체계
2. 이주민 관련 국내법과 정책

제4강 이주민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정책



생각해 보기

이주민 관련 법령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인권 침해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적어본다.



예시

국제법과 일치 정도가 약하며, 법령과 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분리주의적이며 파편화된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 원칙 및 법 적용의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추진체계가 중복되어 있다는 점, 정책의 타당성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학습목표

-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원칙과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이주민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 원칙과 체계
- 이주민 관련 국내법·정책

가. 비차별 원칙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핵심은 비차별의 원칙이다. 비차별 원칙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 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모든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원칙이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인권협약들도 이 비차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협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비차별 원칙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주요 국제인권기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각종 노동 관련 협약과 앞서 본 유엔의 인권협약들이 있다. 특히 유엔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 즉 우리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라고 부르는 협약을 채택하여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1) 국제노동기구 ILO의 국제노동기준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주민에 대한 협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ILO 협약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된다. ILO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국내법에 협약의 보장사항을 도입해야 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ILO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ILO 협약들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협약과 이주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협약으로 나뉘볼 수 있다. 기본적인 협약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금지, 고용차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주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협약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고용의 최저연령, 여성 및 연소자의 노동, 주거시설, 사회보장, 노동조합 등에 관련된 것으로 내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 배경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유엔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일부 국가 등에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합법적 이주와 더불어 ‘노예, 강제노동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아프리카 국가 출신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유입국 안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드러남에 따라 채택되었다.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하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1990년 채택되었고, 2003년 발효되어 2013년 9월 47개국에서 비준했다.

●특징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의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고 가족재결합권을 포함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했다. 또한, 이주에 대한 개념과 범주,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최초로 밝히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포괄적,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기본 인권 개념을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키며, 취업국 시민들과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 준비과정부터, 취업생활,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비차별원칙,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장, 등록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추가적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이 협약은 당사국의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비차별의 원칙을 명시했다.

둘째,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일정한 범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중요한 보장 내용으로는 보수 및 근로조건에 있어 취업국 국민과 동등 대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권 보장, 이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 등이 있다. 나아가 이 협약은 비정규 형태의 이주가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규적 형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취업국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출신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 교육기관 이용, 직업안내, 사회주택계획 등 주택의 이용, 사회보장 및 보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취업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보장 등이 있다.

유엔협약감시기구 등 국제사회는, 공통적으로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목하여,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조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고 있다.

2 이주민 관련 국내법과 정책

가. 이주민 관련 국내법령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며,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인 “인종, 피부색, 가문,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여 외국인을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 보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 또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주민 관련법은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법령이다. 외국인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적법」이 있다. 입출국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이 있으며, 체류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있다.

1)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

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즉, 사회보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험법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법, 사회보상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인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국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 국적법

「국적법」은 국민과 비국민의 자격과 구분에 대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출생, 인지, 귀화, 수반, 국적회복, 재취득 등에 의한 한국 국적의 취득의 요건과 국적의 포기, 선택, 이탈, 상실, 허가 등의 취소 등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국적 판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민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은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귀화에는 일반귀화와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가 있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3년 이상 혼인상태이면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귀화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시에는 거주 잔여기간을 채워야 귀화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주로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주민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관련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사유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함, 절차적으로 위법한 단속의 관행, 구금 및 강제퇴거 시 절차의 무시, 비정규 체류자 구금시설에서 격리 구금, 장기구금 및 인권 침해, 이주민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의 통보의무, HIV/AIDS 검사 및 이를 이유로 한 입국금지/강제퇴거, 영주권 취득 요건의 강화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주민노동자의 단기적인 순환 정책을 통해 정주화를 방지하고, 가족이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협소한 범위로 다문화 가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의미하여, 한국 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이주민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배제되고 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혼인하기로 하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비혼의 경우나,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6) 난민법

「난민법」은 201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제1장 총칙,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위원회,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민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총칙, 외국인정

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보통 「재외동포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해 사실상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재외동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해석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재중 및 재외동포를 배제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이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등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남아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법」 적용 전단계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법」의 자유 체류의 규정과는 달리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36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재미동포와 및 재일동포에는 출입국과 체류활동에 제한이 없다. 결국, 재외동포들은 출신국가에 따라 대상별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문취업제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동포는 약29만여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체류만기가 되면 법무부에서 발표한 재입국 방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재중동포는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자유왕래권, 가족결합권, 노동권 등 주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나. 이주민 관련 국내 정책

다문화 정책이란 포괄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뜻한다.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은 크게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주민 정책에는 이민 정책이 포함된다. 이민 정책은 내·외국인의 이주 및 사회통합을 포

괄하는 정책으로서, 출입국, 외국인력,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회 통합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단결과 유대를 재고하는 정책으로, 이주민 정책의 한 분야이다.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며, 다문화주의가 다문화 정책에 반영될 때 일반적으로 3단계를 따른다. 1단계는 관용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민교육과 사회화 과정이며, 2 단계는 다문화에 대한 비차별의 제도화로, 표현, 접근, 물질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3단계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으로, 다문화, 자치, 집단대표의 권리를 인정하는 단계이다.

다문화주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들이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법무부가 수립하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있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에 다문화정책 내용 수립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이 있다.

1)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는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3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며, 제 2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은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를 유치 위한 개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인권의 차별방지와 문화의 다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2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를 위한 미래공헌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에서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 이다. 이 정책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의 정비하는 것을 과제로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4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제2차 권고안은 2012년부터 2016년 4년에 걸쳐 적용되었다. 정부 각 부처는 이 권고안을 받아 상세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법무부는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주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기본권 보장권고
 이주민 가족의 양육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 보장권고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모성 보호 증진 등을 권고

●난민

난민인정절차에서 전문성 제고, 심사절차에서 공정성 확보권고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사회보장권 증진 등을 권고

●재외동포

국가의 인적 구성요소인 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권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무 이행 등을 권고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민 관련 법령과 정책을 이주민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을 적어본다.



예시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인권의 지평에서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통합적이며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 앞의 평등 및 공정한 법 적용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 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가 기관에 의한 제도적인 차별을 감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인권 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풀기

1.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O, X)
 - 정답 : O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

2. 이주민의 입국, 체류, 출국, 귀화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한다. (O, X)
 - 정답 : X
 - 해설 : 이주민의 귀화 등 국적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적법」이 규정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O, X)
 - 정답 : O
 - 해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하기

- ◆ 이주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으로서 『헌법』과 『국적법』이 있다. 「헌법」은 국제법과 협약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며, 「국적법」은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이주민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가지고 있다.
- ◆ 다문화 정책이란 포괄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을 뜻하며, 다문화 정책은 크게 이주민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법무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수립하고 법무부가 종합 총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다.

제5강

이주민과 기업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
2. 고용허가제와 기업의 인권경영

제5강

이주민과 기업



생각해 보기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지 적어본다.



예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에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입국 전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2년이 넘을 경우 한국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학습목표

-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
- 고용허가제와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의 역사
- 고용허가제와 기업의 인권경영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

가. 비공식적인 역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력정책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 초반, 중국동포가 국내에서 관광비자나 친척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에 일하면서 외국 인력의 비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동포 외의 아시아권 이주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제조업 등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산업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기면서 외국인 인력정책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이다. 1991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 법인 등을 설립할 때 해당국의 노동자에게 국내의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노동자를 입국시켜 기술연수를 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 여부 등을 심사하고 기업의 해외 현지 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1993년도에 도입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을 외국인에게 연수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기술연수 없이 단순 제조업에 근무하면서도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여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이 제도는 2007년 1월 1일 폐지되고, 기존 외국인산업연수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 고용허가제와 기업의 인권경영

가. 고용허가제

그 동안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제도가 없어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미등록이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2003년 8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인정하여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외국인 인력제도로써 고용허가제를 합법적으로 도입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누어진다.

1) 일반고용허가제

일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최초 한국 입국 시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것이며, 단기취업이므로 가족 동반은 금지한다. 3년 만료 시 사업주가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면 추가로 1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4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3개월 이후 다시 입국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이 고용허가제도에 근거하여, 2013년 현재 한국 정부와 노동자 고용에 관한 MOU를 체결한 15개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의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보다 개선된 제도일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많이 제한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받고 있다. 개선이 요구되는 주요 내용들은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횟수 제한, 근로기간 제한, 구직기간의 제한, 가족 초청 금지, 재입국 제한 등 다양하다.

2) 특례고용허가제

이 제도는 외국국적자 중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된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 역시 대상에 해당된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

제에서 인정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일반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보다 업종선택의 폭이 넓고, 사업장 변경 시에도 사업주의 합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고용허가제 노동자보다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특례고용허가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방문취업제도이다. 방문취업 제도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 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방문취업제도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 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또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화를 확대하고, 입국할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을 한 후에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도 사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나. 기업의 인권경영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근로하는 이주민은 임금체불, 폭행, 강제추방, 여권 압류 등의 인권침해와 문화적 차별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업 또한 이주민 인권과 다문화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특정한 인종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주민 증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주민의 시민권을 반대하거나 강제퇴거를 주장하며 이주민 송환 정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거나 이주민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다는 등의 위기의식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배경으로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기업 내 인권침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 진정사례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들은 국외에서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 저하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편견을 낳고 있다.

1) 이슬람과의 식문화 차이

파키스탄인 A씨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어느 날 돼지고기가 반찬으로 나와 잘 하지 못하는 한국말로 “나는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다른 밥을 달라.” 라고 했는데, 사장이 “배부르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지. 배고프면 돼지고기를 왜 못 먹느냐고 사람들 앞에서 욕했습니다. 눈치를 췌 주방 아주머니가 라면을 끓여 왔으나, 라면 역시 돼지고기 기름을 사용하여 튀기는 음식입니다. 주방 아주머니에게 “이것도 돼지고기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라고 하자, 사장이 달려와 식판을 식당 바닥에 뒤집어 었었습니다. 사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밖에 모른다. 한국에 와서는 한국의 음식 습관을 따라야 한다!” 라고 하며 저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고용주는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심한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슬람권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을 돼지농장 등에서 일하도록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종교적·문화적 금기가 존재한다. 이는 이슬람 지역의 건조한 기후 조건상 돼지를 키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돼지고기가 비교적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위생상 돼지고기 섭취를 막으려는 노력이 종교적·사회적 금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2) 식사습관 차이

방글라데시인 A씨

회사에서 제 별명은 ‘더러운 놈’입니다. 한국인들은 저에게 밥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먹고, 화장실에 갈 때도 더러운 손으로 뒤처리하는, 무식한 나라에서 온 더러운 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리고, 저를 따돌립니다.

방글라데시인 A씨의 경우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식사습관에 때문에 한국인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동료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직 지구상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보다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권이 존재하고, 화장실 뒤처리를 휴지가 아닌 물로 처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다. 휴지로 하

는 화장실 뒤처리하는 고급문화이고, 물로 하는 뒤처리는 저급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후자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비데'이다. 또한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이 없는 한국인과 달리, 남부아시아인들은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구분하여, 음식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화장실에서는 왼손을 사용한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물건을 가리키거나 집는 행위를 기피한다. 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왼손을 이용하여 음식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가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 한국인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귀엽고 예쁘다는 의미로 하는 행동인지 모르나, 태국인들은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태국인들은 머리를 신성한 부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동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언어로 인한 오해

중국인 W씨 :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시다. 한국인 K씨와 함께 있는 동료 중국인에게 “츠팔로마” 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국인 K씨는 “#발 놔!”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마대자루로 때렸습니다.

베트남인 S씨 : 저는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되었지만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반장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도 특히나 위험한 선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W씨와 베트남인 S씨의 경우처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때로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고용주들에게 불만이 많을 경우, 고용주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나라말로 고용주에게 심한 욕을 하기도 하는데,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와 더불어 업무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언어능력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4) 한국의 빨리빨리

스리랑카인 M씨는 H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던 어느 날 고용주로부터 머리를 잡히고 휘둘리며 벽에 부딪히는 폭행을 당했다. 사원들 앞에서 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다음 날 오전 약국에 가서 약을 마르고 출근하여 다른 자리에 가서 일했다. 이 일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노동부에서 고용주로부터 폭행 이유를 들어보니 M씨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다.

스리랑카인 M씨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는 바로 ‘빨리 빨리’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역동성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집단주의 또는 조급주의로 이해된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의 더운 나라에서 왔고, 그들은 길을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난다. 그 이유는 땀을 적당히 흘리기 위해서이며, 더운 나라에서의 ‘빨리 빨리’는 자칫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몸에 배어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속도와 더운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5)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이주노동자들 중 여성이주노동자는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태국인 B씨와 Y씨는 근무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 고용주가 여자기숙사에 들어와 B씨와 Y씨 등의 가슴과 등을 만지자 저항했다. 그래도, 고용주는 계속 퀘찰다며 치근덕거리어서 B씨와 Y씨는 고용주를 밀어내고 문을 잠가 버렸지만, 그 이후로도 고용주의 성희롱은 계속됐다. 한 달에 1번 정도 기숙사에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며 샤워 중에도 들어와 몸을 만지고, 샤워 후 술자리를 요구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고용주는 다른 몽골, 베트남 이주여성도 성추행을 하고 목욕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엿보기도 했다. 그 후 B씨와 Y씨는 태국대사관에 연락을 했고, 고용주는 결국 성추행 고소를 당해 그 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6) 낮은 임금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투신자살까지 기도했던 중국인 이주노동자의 사례이다. 중국인 K씨 등 8명은 대규모 섬유업체에서 근무했는데 2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잔업을 포함해 월 45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는 평균임금 실정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한국생활에 적응해 보니 그들이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동부를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이를 알게 된 회사는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출통제를 강화했다. 작업을 종료한 후나 휴일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기숙사의 현관문을 쇠사슬로 잠가 놓기도 해,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뒤 어느 날 새벽, 긴장한 남자 20여 명이 중국인 K씨 등 8명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기숙사 문을 부수고 이들을 끌어냈다. 숙옷만 입고 있던 8명 중 4명이 브래지어까지 벗어던지며 알몸으로 저항하고, W씨는 아래옷까지 벗은 알몸으로 저항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긴장한 회사 측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끌어냈다. W씨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4층 기숙사 창문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다행히 W씨를 끌어내려 불상사를 막았다. 결국 이 회사는 노동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실정법을 악용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 탄압을 가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 중 하나이다.

7) 산업재해 불인정

W씨 : 저는 한 직장에서만 3년 넘게 낮은 자리에 앉아 강도 높은 일을 했고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갔더니,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2주 이상 안정치료와 약물치료, 의학적 요법이 필요하고 통증이 지속되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사장 : 회사에서는 산업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이동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W씨 : 사장이 그렇게 면박을 주고 인정을 안 해줬지만 요추염좌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자, 회사는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대신 직장을 이동시켜주었습니다.

W씨의 경우처럼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실수로 다친 일은 노동자만의 책임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치료비의 절반을 주면서 이주노동자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선심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8) 사업장 이동의 제한

베트남인 D씨는 선반 금형 작업을 3개월 정도 했다. 철을 다루는 일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 매달 숙식비로 35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적은 월급에서 숙식비를 빼고 나니,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 고향에 보낼 돈이 모자라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고용주는 사업장 변경 요청을 언짢게 여기고 먹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사업장 변경은 안 된다고 하며 회를 냈다. 또한, 고용주의 동생은 칠판지우개를 얼굴에 던지며 “200만 원을 주면 직장 이동을 시켜 주겠다.” 라고 했다. 결국 고용주에게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고용주는 돈을 요구하며 일을 못하게 했다.

베트남인 D씨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환경과 일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권한이 고용주에게 있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고용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고용허가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response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정보 및 국내 노동관련법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특히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 상 및 회수의 제한을 유연화하며,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이주노동자는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을 이동한 노동자에게 마지막 사업주가 요청 시 재입국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인권침해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묵인하게 하는 상황을 제거한다.
-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대처 교육, 산업안전교육 및 산재보상 절차 교육 등을 모국어로 하며, 산재 사고 발생 시나 계속적인 위험물질 노출 및 작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처 요령, 건강 검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기숙사 규정 등을 준수하게 하고, 기준 미달 숙소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공제상한선을 마련하여 과도한 월급공제를 방지해야 한다.



문제 풀기

1.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다. (O, X)
 - 정답 X
 - 해설 :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2007년 1월 폐지되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2. 고용허가제도는 사업장 변경 사유 및 변경 횟수 제한, 근로기간 제한, 구직기간의 제한, 가족초청 금지, 재입국 제한 등을 하고 있다. (O, X)
 - 정답 : O
 - 해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4, 제25조 참조.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슬람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로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O, X)
 - 정답 : X
 - 해설 :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슬람 지역의 건조한 기후 조건상 돼지를 키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돼지고기가 비교적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위생상 돼지고기 섭취를 막으려는 노력이 종교적·사회적 금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돼지고기 섭취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정리하기

- ◆ 1980년대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처하면서 1980년대 초반에는 중국동포가, 1980년대 후반 부터는 아시아권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두었 으나,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 보호를 하지 않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 했다.
- ◆ 2003년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같이 노동관계법 등을 적용하 는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한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이동을 원칙적 금지, 구직기간의 제한,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 재입국 제한, 가족초청 금지 등 이 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가족결합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 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 ◆ 각 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생활문화의 차이, 한국어 구사 및 이해 능력의 미흡 등으 로 폭언, 폭행, 성폭행, 산업재해의 불인정,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치료비 미 제공, 금 품 요구 등의 인권침해에 처하기도 한다.
-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경영 의식의 도입, 함께 일 하는 이주노동자의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과 수용, 고용허가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6강

미등록 이주민과 출입국 관리



1.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제6강

미등록 이주민과 출입국 관리



생각해 보기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어 본다.



예시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며, 주거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하며, 단속과정 중에 다친 경우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갑을 착용한 채 단속차량 안에 장시간 가두어 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하거나,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학습목표

-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
-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미등록이주민의 정의

국내에서 미등록이주민이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이주민을 통칭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미등록이주민 혹은 비정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는 미등록이주민으로 통칭한다.

나. 미등록 이주민의 현황

2001년 12월 말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 영역 외국인력 31만 명의 82.3%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부족에 대해 정부가 목인한 결과였다. 이후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기존 미등록이주민의 한시적인 합법화와 지속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통해 이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그래도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많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민은 총 177,854명으로 이 중 168,279명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이다. 국내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이들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형태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2011년까지 미등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미등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본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체류 이주민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미등록자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7,854
미등록 비율	21.0%	17.3%	15.2%	13.4%	12%	12.4%

〈연도별 국내 체류 이주민 중 등록자 및 미등록자 현황〉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 및 관련 규정

1) 미등록 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미등록이주민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단속, 보호, 강제퇴거결정, 보호, 강제퇴거집행의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서 강제퇴거까지의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은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속과정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들의 지속적 발생
보호단계	사실상 인신구속의 행정처분임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강제퇴거결정과정	강제퇴거사유가 불분명한 개념일 때가 있고, 이의신청절차는 거의 형식에 불과
보호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보호가 가능
강제퇴거 집행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를 집행하거나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사례들 발생

2)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준칙」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 기본원칙〉

- 외국인 등에 대해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제시해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계구 및 보안장구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인권침해 발생 방지 규정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근거, 요건, 절차 규정의 부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민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 간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래서 현재 까지도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1) 단속반원 제복 미착용 및 신분증 미제시(인권위 2012. 3. 27. 11진정0554000 결정)

A씨 : 출입국공무원들이 신발공장에 들어와 불법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발공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가서 공장 내로 최초 진입한 단속직원이 공장 입구에 있던 내국인 공장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고지한 후 단속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촬영된 CCTV를 확인해보았더니 단속반원들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고지도 안 한 채 순식간에 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 시 법령상 의무인 증표 및 소속과 성명 제시, 조사목적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장에 진입한 단속행위이므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어긴 과도한 법집행이며 「헌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입국사범의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 절차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외관상 신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하고, 검문 전에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해야한다. 그런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속반원의 복장 및 신분증 제시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 단속 시 주거지나 사업장에 무단 진입(인권위 2012. 4. 24. 11진정0548400 결정)

출입국단속반원들이 사전에 공장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 단속한 사례가 있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사무실 위치를 사전에 알 수 없어서 단속 시작 전에 공장책임자에게 고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반의 책임자는 단속 시작 전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단속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장책임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단속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 긴급보호 개시 시점 및 긴급보호사유 미설명(인권위 2009. 10. 12. 09진인2516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긴급보호서 제시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단속중국인들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했다며 반박했고, 일반적으로 긴급보호서는 단속외 국인을 단속 차량으로 이동 보호함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과정을 목격했던 이웃사람은 단속 중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에 소송차량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며,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한 행위는 「형법」상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위법한 관행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긴급보호제도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 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울러 긴급보호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4) 단속 시 폭행이나 폭언(인권위 2009. 10. 12. 09진인2516 결정)

한 이주민노동자가 단속반원으로부터 수갑으로 뒤통수를 가격 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단속반원은 이주민들이 단속에 심하게 저항해서 다친 거라고 했고, 수갑 이외의 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단속시점이 주간이고 주위에 일반 시민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어서 과잉단속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목격자인 참고인의 의견은 달랐는데, 참고인이 목격한 바로는 단속차 앞에서 단속반원 한 명이 외국인 한 명을 붙들고 있었고, 다른 단속반원 한 명이 수갑 낄을 세워서 머리를 4~5차례 때린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5) 단속과정에서 상해에 대한 의료 조치 미흡(인권위 2005. 4. 6. 05진인147 결정)

이주민 H씨 : 단속반원 2~3명이 저를 잡아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폭행하고, 수갑을 오른손목에 채우고 한쪽은 단속반원 손에 채운 후 일으켜 세워 발로 이마를 가격해 쓰러져 잠깐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또한, 전기충격기로 가슴을 충격하고, 차량에 탑승한 후 성명불상 직원이 폭행, 가혹행위를 하는 등 폭력이 계속되어 결국 이송 중 또 다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성명불상 직원이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의식이 돌아왔고, 다른 직원이 피가 나는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 주었으며, 이후 2명의 직원이 차량에 태워 처음 단속되었던 곳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갔습니다.

출입국관리소 : H씨가 단속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단속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가 미등록자임을 알면서도 탈진 상태 등 신변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훈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른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H씨를 사무소 차량에 탑승시켜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단속된 다른 외국인들 : 어떤 외국인이 단속직원들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피를 많이 흘렸으며,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전도사, 공장장 : 단속 다음 날 H씨를 만났더니 안면부가 부어있고,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으며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씨에 대해 단속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H씨가 부상상태가 심각했음에도 별도의 의료처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 장소에 방치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되므로, 직원들을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6)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 혹은 수갑 착용(인권위 2011. 2. 17. 10진정0099400 결정)

Z씨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가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14명 정도를 수갑을 채운 상태로 10시간 정도 9~12인용 승합차에 인치했다가 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단속과정에 15인용 차량을 운행했으며, 이동과정에서 다수의 미등록 이주민이 일시 적발됨에 따라 Z씨가 약 1시간 30분 정도는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속계호 인원과 차량 등의 인프라 부족, 단속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정의 불가피성, 단속인력 및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법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속팀이 단속을 마친 후 사무소로 이동한 1시간 30분 동안 15명 정원의 차량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탑승시켜 이동했던 행위는 정도가 과한 것으로 보고,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처럼 단속차량에 갇혀 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또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안에 더 오래 갇혀 있기도 한다.

그리고, 단속차량 안에서 수갑을 채운 상태로 끝까지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수갑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하나 살펴보자면, 단속된 외국인이 단속공무원들에게 수갑을 벗겨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호송하여, 결국 손가락에 감각이상이 오고 손목에 찰과상까지 입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단속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적절히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한 과실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7) 단속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인권위 2008. 12. 29. 08진인4364·4440 병합 결정)

J씨 : 근무하는 공장에서 자고 있던 중에 11명의 동료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당시 반나체 상태여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셔츠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그 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 : J씨가 숙소 방문을 밀치고 도주를 기도하여 단속공무원들이 5백여 미터를 뒤쫓아 검거했으며, 당시 J씨는 바지는 입고 상의는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승합차에는 여성 직원이 승차하고 있었지만, 앞은 줄이 달라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들은 상의를 입게 해 달라는 J씨의 요구를 짧은 이동거리와 단속현장 상황이 긴박성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된 상태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J씨는 승합차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혼자만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고, 그 승합차에는 여성공무원이 동승하고 있던 상황에 J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결국,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수행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의 면에서도 적정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1) 폭행이나 협박(인권위 2010. 7. 26. 10진정0392900 결정)

L씨 : 단속과정에서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인 J씨가 조사실에서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J씨 : 단속에 참여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L씨가 병으로 단속 직원을 쳤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앉아 있는 L씨의 머리를 왼손바닥으로 한 번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L씨의 입안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피를 닦게 하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L씨는 또 맞을 것 같아서인지 겁에 질린 것 같았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빌기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조사를 받은 L씨 동료 : 조사를 받던 중 J씨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L씨의 머리를 한 대 치고, L씨가 머리를 숙이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복부를 두 번 가격했습니다. 또, L씨가 피를 토하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다시 L씨의 복부를 한번 가격했고, L씨는 다시 바닥에 피를 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성명불상의 직원이 L씨를 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어혈이며 근육에 피가 났고 손상되었다고 했으며, 또 그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CT를 찍은 결과로는 늑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J씨의 폭행행위는 L씨에게 신체의 상해 및 고통·정신적 불안감 및 수치심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의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된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인 J씨를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또한, 상급자인 단속팀장은 피해자를 폭행한 J씨를 L씨와 격리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사과장은 J씨의 행위에 대해 특별한 감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둘 다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 부당한 신체검사(인권위 2009. 12. 28. 09진인3635·4896 결정)

A씨 :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드는 등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A씨에게 불법취업사실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A씨가 진술서를 몸속에 숨겼다고 했으며, A씨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화장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어, 진술서를 찾기 위해 단속팀장의 감독 하에, 다른 보호외국인들이 없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A씨의 팬티를 잡아내려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나 결국 진술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피보호자의 신체검사는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진술서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체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팬티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했음을 지적했다. 진술서가 없어졌다면 진술서를 재작성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행위는 직무 권한 행사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3)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미흡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출입국사무소 직원과의 의사소통에서 통역인이 있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통역의 부재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 외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52.6%를 차지했다.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UN피구금자보호원칙」 14는, “체포, 억류, 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하여 억류명령 및 그 이유,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 받을 권리를 갖고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기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적어본다.



예시

-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근거, 요건,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한다.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정에 대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공개된 지침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열거함으로써,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에 의해 주거지를 침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속된 후에도 통역의 지원 등으로 권리 고지를 제대로 한다.
-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혜택과 정보를 제공한다.
- 미등록 이주민이 국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인 만큼 강제송환 보다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기간, 경제적 기여도 등을 심사한 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문제 풀기

1. 출입국사범의 단속에 대한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준칙」이 있다. (O , X)
 - 정답 : ○
 - 해설 : 법무부 훈령 2009. 5. 13. 제정

2.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 및 제시해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O , X)
 - 정답 : ○
 - 해설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준칙」 제3조 제4호

3.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보호제도는 단속을 당한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이므로, 긴급보호시기는 단속 당시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O , X)
 - 정답 : ○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차량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는 관행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2009. 10. 12. 결정, 09진인2516)



정리하기

- ◆ 미등록 이주민이란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중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이주민을 말한다.
- ◆ 미등록 이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되면 외국인보호소 등에서의 보호, 강제퇴거 결정, 강제퇴거 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 ◆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준칙」을 두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단속 근거,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은 없으며,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정에 단속반원의 신분증 미 제시, 사업장이나 주거의 무단 침입, 긴급보호서 미제시, 권리 미고지, 폭행이나 폭언, 과도한 장구 사용, 장시간 호송차량 인치, 상해에 대한 의료 처치 미제공,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통역 미제공, 성적 수치심 발생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 ◆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단속의 근거,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 출입국관리업무공무원의 단속 관련 적법절차의 준수, 미등록 이주민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마련,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 방안 모색 등이 있어야 한다.

제7강

외국인보호시설과 강제퇴거



1. 외국인 보호 시설
2. 강제퇴거

제7강

외국인보호시설과 강제퇴거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시설의 근무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어본다.

비디오 촬영이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초상 등 인격적 징표가 도용되고, 명예감정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피보호자에 대한 비디오 촬영은 보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비디오의 시험작동 등 아무런 필요 없이 하는 비디오 촬영,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피보호자 동의 없는 비디오 촬영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학습목표

-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알 수 있다
-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외국인보호시설
- 강제퇴거

가. 외국인 보호의 개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주로 보호소 등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를 법적 용어로 ‘보호’ 라고 한다. 구금이 아닌 보호라고 약하게 표현하지만, 보호시설은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 등과 동일하다. 보호는 보호명령서 발부, 보호외국인기록표 작성, 물품급여 및 대여, 개인 물품 보관, 생활규칙 안내, 보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기간은 보호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 강제퇴거의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호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1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20일을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낼 수 없을 경우에 보호기간은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로,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보호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 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보호 외국인들의 외부소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의료권, 쾌적한 시설과 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나. 외국인 보호 시설의 인권 침해

1) 폭행과 상해(인권위 2008. 12. 29. 08진인3668 결정)

K씨 : 출입국관리공무원인 L씨에게 면도기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어로 욕을 하며 폭행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L씨 : 출입국관리공무원입니다. 전기면도기 지급을 요청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이니 조금 후에 가져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보호실 문을 걸어차면서 빨리

가져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저에게 종이컵을 던져 얼굴에 맞고 순간 화가 나서 종이컵을 보호실 안으로 던졌으며 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탁자를 가리키며 '저기 들어가 앉아!'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 CCTV 녹화영상에 발길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동작을 흉내 낸 것이지 폭행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 경비대원 :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는 했지만 폭행은 없었습니다.

참고인 보호외국인 : 제가 봤는데, L씨의 발길질이 신체에 닿지는 않았으나 종이컵을 보호실로 던진 후 서로 욕하다가 L씨의 주먹이 외국인 얼굴을 맞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외국인의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 폭행(인권위 2008. 7. 28. 07진인5087 결정)

P씨 : 보호소 직원 K씨가 자신을 외국인보호소 내에 있는 특별보호실 통로로 데려가 약 20~30분 동안 무릎, 발등으로 어깨와 허리, 명치 근처를 폭행했습니다.

K씨 : 보호소 내에서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있는 P씨에게 보호복을 착용하라고 했는데, P씨가 반발하여 특별 보호실로 데려가 약 20~30분간 그러지 말아라는 취지로 타일렀을 뿐 폭행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당시 P씨가 보호실로 돌아와 계속 아프다고 한 점, P씨가 점심을 먹지 못했고 다른 직원이 P씨의 손을 잡고 부축하여 의무실로 데리고 간 점, 다음 날 오전 지인과 면담할 당시 P씨가 평소와 달리 초췌하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다는 점, P씨가 3일간 보호실에서 계속 아프다고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K씨가 P씨에게 외상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알 권리의 침해(인권위 2008. 12. 29. 08진인1694 결정)

S씨 : 저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A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서신을 수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소식지는 소식지 내용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품담당직원이 보호실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고, 이후에도 저보다 먼저 봉투를 사전에 개봉하는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호소 : A소식지가 서신이 아닌 책으로 분류된 우체국 택배물로 발송되어 면회실에 접수되었고, 물품창고에 보관되었으나 S씨가 한참이 지나서야 택배물 확인을 요청하여 요청 당일 소식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신, 간행물, 신문 등은 내용을 검열하고 있지 않으며, 우편물 또한 미리 개봉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해롭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품 담당자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과장이나 소장과의 상의하여 반입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의 통신 및 열람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물품담당자 및 경비과장 등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행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정보접근 및 처리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와 동 규칙의 시행세칙 제12조의 도서, 신문, 잡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4) 건강권 침해(인권위 2008. 1. 28. 08진인244 결정)

C씨 : 저는 7개월간 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진결과 식후 혈당이 높아 당뇨관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을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확인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고, 감금 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외국인보호소 : 현재 보호소 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 운동 등을 통해 C씨를 별도 관리하면서 당뇨의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C씨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 C씨를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 입원조치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2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했으나, 동 규칙에 구체적인 검진항목이 적시되지 않은 관계로 단순한 신체검사만 했고, 이에 따라 당뇨와 같이 내과적 질환의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의 발견과 대처에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신체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기에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 규정하는 등 좀 더 세밀한 배려가 따라야, 실제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5) 진정방해(인권위 2008. 1. 28. 07진인4510 결정)

T씨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소속직원인 D씨에게 작성한 진정서를 주고 팩스로 위원회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발송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직원 D씨 : T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진정서 내용에 인권침해 내용은 없고, 난민신청 관련 내용이 있어 난민담당자인 본인이 난민접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일 뿐 진정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T씨가 외국인보호소에 전달한 서신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D씨가 T씨의 서신 내용을 난민신청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이를 설명했더라도 T씨가 수긍하지 않았다면 D씨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켜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진정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시설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진정서 송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6) 부당한 이송처분(인권위 2008. 1. 28. 07진인121 결정)

Y씨 : 이송 사유와 이송 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 없이 본인을 포함하여 11명과 함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진행 및 관련 청원 등을 방해하고 그 동안 해온 부당한 처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 일부 이주민이 자해를 기도하고 단식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경우에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송처분으로 Y씨 등이 보호결정, 강제퇴거결정, 보호시설 내의 처우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변호인 접견권, 가족과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난민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법률 마련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 의료조치 미흡(인권위 2005. 11. 7. 05진인2530 결정)

N씨 : 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팔과 다리, 발목, 우측 발뒤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보호소 근무 직원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방치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붓기 때문에 수술 받지 못하고 고정용 깁스 처치를 받은 뒤 다시 보호소로 왔으며 붓기가 빠진 뒤 수술 받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 : N씨를 인계한 보호소입니다. 단속요원들이 N씨를 보호실에 인계하면서 보호 전담요원에게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발목을 뺨 것 같다고 들은 뒤, 발목을 살펴봤으나 특별히 붓거나 외상이 없어 보호실 구금약품인 소염진통제를 발라주는 등의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업무를 인계인수하면서 N씨의 발목을 살펴보니 상처부위가 부어있어 병원진찰을 결정했고, 지정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진찰을 받은 뒤 우측 종골 골절 및 뇌진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담당이 N씨를 인계 받을 당시, 발목이 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부상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는 상처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그 내용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해야 하고, 상처 또는 신체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곧바로 의사에게 진료 받게 해야 한다는,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 5조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 강제퇴거

가. 강제퇴거의 개념

강제퇴거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에 대해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이고 그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퇴거는 강제퇴거 결정, 보호, 강제퇴거명령 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작용이다. 하지만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라는 강제추방 절차는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와 근접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양한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나. 강제퇴거 사례

1) 부당한 강제퇴거 명령(인권위 2008. 12. 28. 08진인4578 결정)

K씨 :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발부 받았는데 이는 부당합니다.

출입국관리소 : K씨가 단속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횡설수설하여 정밀조사를 한 결과 생년월일을 고쳐서 입국했음을 진술했기 때문에 강제퇴거 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씨가 소지한 여권의 생년월일이 본국 정부가 발행한 거민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등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권의 위조가능성을 이유로, 보호 및 강제퇴거 조치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K씨에 대한 보호해제 및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권고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인권위 2008. 4. 28. 08진인28 결정)

D씨 : 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변호인입니다. 출입국보호사무소는 새벽에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시작하면서 그 전날과 같은 날 오전까지 대리인인 변호인에게 사후 절차에 대해 받은 질문에 대해 내부에서 상의해야 한다고만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나 강제출국을 진행했습니다.

출입국보호사무소 : 저희 입장에서는 D씨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퇴거집행에 저항을 시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변호인에게 퇴거집행계획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정당한 범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2조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고,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보호 내지

수용시설에 구금되었다면 집견교통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가 D씨를 포함한 변호인에게 집행절차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행 이후에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 체류자격 변경 불허(인권위 2007. 9. 11. 06진인2702 결정)

H씨 : 저는 미등록이주민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과 교제하여 보호해제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했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못한 것은 보호일시해제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퇴거결정을 취소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 출입국사범에게까지 혼인신고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게 된다면 체류질서 문란 등 법적안정성의 침해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체류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H씨의 혼인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H씨가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구성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H 씨가 강제퇴거 된 후 1년이 지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겪어야 할 불편함과 피해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인 출국과 재입국의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는 제도적 미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퇴거 집행 정지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에 대한 특례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 납부 등의 절차를 통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4)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급(인권위 2009. 12. 28. 09진인2790 결정)

K씨 :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는데 가족 중에는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보호시설이 위생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함께 보호시켰습니다.

출입국사무소 : 보호실이 신축되어 청결한 상태였으며,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동일지라도 성인미등록이주민과 같이 보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모차를 포함하여 분유, 젖병 등 수유기구, 기저귀, 담요 등 유아와 관련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익 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된 경우에 이들을 구급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기간이어야 하고,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 보호보다는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5) 폭행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인권위 2002. 12. 9. 02진인1487 결정)

P씨 : 저는 밀린 임금 1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사업주와 그의 두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앞니 2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등록이주민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P씨가 불법 체류하여 강제퇴거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P씨가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가 남아 있고, 임금체불도 청산되지 않았는데, P씨에 대한 보호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P씨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가 예상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P씨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후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적어본다.

7강

외국인강 보호제 호퇴거 시거 설과



예시

강제퇴거가 법적 절차에 의한 조처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에 차질을 빚게 하므로,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인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사 종료 시까지 또는 위원회가 출국에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위 2008. 4. 28. 08진인28 결정 참조)



문제 풀기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보호소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다. (O, X)

○ 정답 : ○

○ 해설 :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나 최장 20일을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제한 없이 보호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강제퇴거라는 강제추방 절차는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와 근접한 절차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O, X)

○ 정답 : ○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 2008. 4. 28. 결정, 08진인28

3.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과 폭행피해자로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O, X)

○ 정답 : ○

○ 해설 : 인권위 2002.12.9. 결정, 02진인1487



정리하기

-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된다. 보호시설은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으며,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과 동일하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시설도 외부소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의료권, 쾌적한 시설·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강제로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절차가 인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강제퇴거는 형사사법 절차와 근접한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며, 구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제퇴거집행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8강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1. 난민과 무국적자의 개념
2. 난민과 무국적자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
3.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

제8강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생각해 보기

난민들이 겪는 인권침해나 고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어본다.

예시

국제 인권 규범들은 난민이나 무국적자가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담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전세계 최하위권이다. 무국적자는 판정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는 난민과 무국적자는 한국의 시민사회에 여전히 생소한 집단이다.

난민의 경우는 낮은 인정률, 심사기간의 장기화, 부정적 인식과 편견, 열악한 생활수준과 지역 사회로부터의 고립, 사회무관심을 겪는다. 무국적자의 경우는 등록절차의 부재, 적법한 체류 자격 미부여, 일체의 외국인 정책으로부터의 배제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난민이나 무국적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혐오나 인종 차별로 인한 생명, 신체, 안전의 침해, 그리고, 교육권, 의료권 등 다양한 인권을 제한받거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습목표

- 난민과 무국적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난민과 무국적자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을 알 수 있다.
-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의 개선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내용

- 난민과 무국적자 개념
- 난민과 무국적자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
-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
-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 인권 관련 진정사례

가. 난민의 개념

1951년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둘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고, 셋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넷째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을 것 이다. 난민을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협약 난민, 위임난민, 인도적 지위, 현지체재 중 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협약난민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체약국이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 위임난민

난민협약 체약국이 아닌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이며,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인도적 지위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 재난 등의 이유로 귀국할 수 없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위' 또는 'B급 지위'를 부여하여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4) 현지 체재 중 난민

자신의 국적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외국에 체류하는 도중 국적국의 상황 변화로 인해 난민이 된 경우이다.

나. 무국적자의 개념

1954년 채택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자란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느 국가의 법률상으로도 국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사실상으로는 형식적인 국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무국적자와 같은 지위에 처한 사람을 뜻한다.

선천적 무국적자는 각국 국적법 저촉으로 인해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후천적 무국적자는, 국가 간 국제법제상의 차이, 혼인과 출생 등록에 관한 법제상의 차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서의 국적 인정의 거부, 국가승계시의 국적 박탈이나 상실, 출생등록의 실패, 부계 혈통주의, 타국적 취득 전의 국적 취소, 정치적 변화, 인종이나 종족 또는 성적 차별, 영토로부터의 추방, 버림받은 아이들, 인신매매, 자녀에게 부모 국적 미부여, 장기해외체류에 의한 자동국적상실, 병역이나 기타 대체복무의 불이행에 의한 국적 박탈, 차별적 사유나 관행에 의한 국적 박탈 등의 사유로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난민과 무국적자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법

가. 유엔의 난민 관련 기구

1) 국제난민구제기관

1946년 후반 2차 회기에서 유엔총회에서 설립했으며, 유엔구제부흥기관(UNRRA)의 업무를 인수받고, 난민의 등록, 보호, 재정착, 송환 등의 책무를 임시로 맡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국제난민구제기관의 사업은 논쟁 대상이 되었고, 자금 또한 부족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자신의 감시 하에 추가적인 국제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국제난민구제기관의 책임이 만료되기 훨씬 이전부터 후속기구의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1943년 유엔총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1951년 3년을 최초임기로 하는 유엔총회의 부속기구로 설립했고, 그 이후 임기를 5년씩 연장해 왔다. 고등판무관실은 난민발생을 예측하고 난민 문제의 항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난민의 강제적 본국송환 방지, 난민신청과정 지원, 법률적 자문 및 지원, 난민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제도, 자발적 본국 송환의 권장 및 지원, 난민의 재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 난민에 관한 국제기준

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수많은 국제기구들은 난민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의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1951년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당시 새로 설립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초되었으며, 난민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협약은 “난민이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그리고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밖에 나와 있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 또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과거의 거주지가 있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국가의 영토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협약은 난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난민 대우의 최소 기준들과 난민의 법적 지위, 고용과 복지에 관한 권리, 신분증 및 여행서류, 조세, 재정착을 위해 입국을 허용 받은 국가로 자산을 이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추방 또는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협약 제33조는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는 난민의 귀화와 동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들은 재판, 교육, 사회보장, 주거 및 이동의 보장에 대한 권리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한 바가 있다.

2)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51년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난민이동은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유증으로만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난민집단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에게는 난민협약의 한시적 보호가 적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부속되어 1967년 의정서가 생겨났고, 새로운 난민들, 즉 협약의 정의에는 해당되지만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들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도 협약을 확대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의정서도 함께 준비했다.

다. 무국적자에 대한 국제기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1954년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무국적자란 어떠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도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무국적자에 대한 대우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1961년 유엔에서 채택했으며, 협약에 따르면 협약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했으나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또, 협약국들은 조건에 변화가 있을 때, 국적을 박탈당하면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박탈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 또는 집단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라. 망명에 대한 국제기준

망명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선언으로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이 있다. 유엔은 1967년 이 선언을 채택했고, 망명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망명의 허용은 평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영토적 비호 허용을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 인도주의적 원칙은 강제송환의 금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떠날 수 있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와 망명을 신청하고 허용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2

조와 제14조를 인용하고 있다.

마. 국내 난민법

1) 국내 난민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난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국내 난민법의 구성

「난민법」은 크게 난민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난민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금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 체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난민 인정 절차

입국심사 시 출입국항을 통한 난민인정신청서 제출과 7일 이내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여부 미결정시 입국 허가 난민인정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이 협조, 변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 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난민에 대한 법적 처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미성년 난민인정자나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학위 및 자격 인정,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입국 허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활동 허용,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은 그 제정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고 아시아 최초로 제정한 법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생계비 등 지원제도, 난민 신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부 가능, 난민인정절차나 법적 처우 지원을 위한 예산 미확보, 법 시행일 이전 난민신청자의 법 적용 배제 등 인권 보호에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개정요구를 받고 있다.

3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

국제사회는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대규모 난민 이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난민신청자들이 고국을 떠난 이후에 직면하는 인권침해 상황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는, 첫째 난민신청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 국제 추세이고, 둘째 난민신청과정 동안, 심지어 난민 지위가 부여된 이후에도 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관용,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폭력, 민족적 및 인종적 긴장 및 분쟁이 많은 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망명신청자들과 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난민발생 국가들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난민의 본국송환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러한 인권침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가. 난민의 입국 규제

일부 국가들은 망명신청자,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이주민의 유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들이 자국 영토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비자 발급 요건을 요구한다거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운송하는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일부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대우에 관한 최저 기준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특히 부적절한 난민심사 절차와 공항 및 국경에서의 강제송환이 난민신청자들에게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들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경우 난민신청자들의 자유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탄 배가 바다로 되돌려 보내져 해상에서 굶어 죽거나 해안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해적 또는 상어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형태의 부당한 대우로는 신체공격,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장기간의 구금, 가혹한 심문 등이 있다. 이는 당사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아서 이들이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로 인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다.

다. 난민신청자들의 권리 부인

국경을 넘어서 망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장기간의 구금 및 심문이 진행되고,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과 심지어 난민 지위가 부여된 이후에도 수많은 규제와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보호소에 수용되고 법원과 법률적 지원이 차단되기까지 한다. 더욱이 난민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으며, 자영업을 할 수도,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귀국한 다수의 난민들은 난민수용국의 비인간적인 삶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라. 생명의 자유, 안전의 권리에 대한 침해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정기적으로 공격당하고 학대받고 있으며, 난민수용소 및 정착촌에서 군대나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세계 난민 인구 중 많은 비율이 여성이며, 이들은 피난국가에서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일을 빈번하게 겪는다.

마. 외국인 혐오적 또는 인종주의적 공격

최근 들어 난민 및 망명신청자들에 대한 폭력적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은 신체적 공격과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특히, 취약한 외국인 집단 난민들이 인종주의적 혐오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논쟁으로 외국인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얼버무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난민, 이주노동자, 이민자 등이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난민의 보호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들의 반복적 위반을 초래하며, 난민들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난민 문제가 인도주의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이주노동자 정책과 난민 정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4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를 시작으로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개선안을 표명해 왔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가. 난민신청 중 경제활동 불가 결정은 생존권 침해 (인권위 2001. 5. 23. 10진정032300 결정)

H씨 :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어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두 명의 자녀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했고, 또한 소송이 진행중인 사람의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생존권이 침해되는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9제 1항에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란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신청자는 그 심사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씨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2007년 8월 17일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리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현행 법제하에서 H씨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H씨에 대해 지난 6여 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고려 없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H씨와 그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H씨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의 차원이 아닌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난민 지위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H씨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에 관한 개선 권고

(인권위 2009. 2. 23. 결정)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 3명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사건이 권고배경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조치하는 것은 난민신청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실질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임에도 사법적인 통제 없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소장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간의 상한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자의적인 구금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의 장기화는 난민신청자의 귀환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도 위반될 소

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라는 사법절차 역시 국내 난민인정절차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러한 국내 절차를 완료해야 난민인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는 것일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난민이 인정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람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 허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했다는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거나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해당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권고(인권위 2012. 12. 6. 결정)

인도적 체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난민법」에서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만 주고 있을 뿐, 생계비는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기타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긴급지원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용대상의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협에 노출된 인도적 체류자를 「긴급복지지원법」에 포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특례규정에 ‘인도적 체류자’로 지원대상자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라. 난민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대처 미흡
(인권위 2013. 9. 25. 11진정0703800 결정)**

K씨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 의사표시를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적절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 의사가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두 달이 넘도록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체류하다가 태국으로 출국당한 것은 부당합니다.
출입국관리소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환승 예정인 K씨가 환승편에 탑승하지 않고 공항 환승 구역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음 날 항공직원에게 발견되자, 동 직원에게 난민신청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K씨에게 난민신청 의사를 확인했지만, 그가 난민의사를 번복하고 본국 귀국을 희망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출입국관리소는 K씨가 귀국 희망 의사표시 후 다시 송환 대기실에서 난민신청의사를 자필로 기재하여 항공사에 제출했고, 항공사가 이를 이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으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여 난민 인정신청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K씨가 일관성 없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묵살한 것은 적절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K씨에게 적절한 재조사와 임시상륙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도 난민협약가입국의 의무 이행 상 부족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법」에서 출입국항에서 좀 더 폭넓게 난민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여러 ‘난민인정 신청’ 상황에 담당직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 등을 정비할 것과 담당직원들에게 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마.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권고
(인권위 2011. 9. 1. 결정)**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경우 위장결혼자는 출신국의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워 무국적자

가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무국적자의 인권상황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했다.

위장결혼이 들통난 경우에 위장결혼했던 이주민은 무국적자가 되고, 무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불안한 생활환경에 처하게 된다. 즉, 국적도, 신분증명서도 없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취업, 혼인신고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거주와 이전의 제한도 받는다. 「여권법」은 출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입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무국적자의 입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국적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 긴급하고 인도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재입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족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권도 제한받는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무국적자는 신분증명 서류가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에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무국적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과 위장결혼으로 발생한 무국적자에 대해 국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국가로의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장결혼으로 인한 무국적자의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도 정부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response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난민 인정률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심사기간을 줄여야 하며, 적극적인 정착지원을 시행한다. 무국적자를 위한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적법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무국적자의 발생 요인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난민과 무국적자를 개인의 상황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을 갖춘다.



문제 풀기

1. 우리나라에 「난민법」은 존재하지 않고 난민에 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O, X)
 - 정답 : X
 - 해설 :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10일에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이 불허되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X)
 - 정답 ○
 - 해설 : 인권위 2011. 5. 23. 10-진정-032300 결정

3. 우리나라는 무국적자와 관련하여 유엔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O, X)
 - 정답 X
 - 해설 : 우리나라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1962년 가입했으나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협약국은 자국 영토에서 출생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기

-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무국적자란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법률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 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는 입국 규제 조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난민신청자들의 권리 부인, 생명의 자유·안전의 권리에 대한 침해, 난민과 외국인 혐오적·인종주의적 공격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 현황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여러 사례가 있다.
- ◆ 무국적자는 국적이나 신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취업, 혼인신고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으며, 입출국의 자유도 없고, 의료권 등도 보장받지 못한다.

제9강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1.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국제결혼과 여성이주민의 인권침해
3. 관련 진정사례

제9강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생각해 보기

이주민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을 적어본다.



예시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대개 3박 4일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인 남성이 외국을 방문하여 다수의 여성과 맞선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여 현지에서 결혼식까지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결혼중개업체는 현지에서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들이 배우자의 선택을 거절할 경우 비용 청구나 맞선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주어 남성 주도적인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이 같은 결혼중개과정이나 상품 광고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결혼광고는 배우자에 대해 돈을 주고 사오는 상품처럼 인식하도록 조장하는 면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현수막을 부착하지 말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학습목표

- 결혼이민자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 중개혼의 문제점, 가정폭력,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결혼이주민의 현황
- 국제결혼과 여성이주민의 인권침해
- 관련 진정사례

1

결혼이주민의 현황

어느 사이인가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국제결혼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여성이며, 이러한 결혼여성이주민의 연령은 20대가 과반수로 배우자인 한국 남성보다 평균 10살 이상 어리다. 결혼하는 계기는 남성이주민의 경우에는 주로 연애이지만, 여성이주민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이주민은 한국국적이 있는 비율이 높지만 여성이주민은 한국국적이 없는 비율이 높다. 남성이주민은 주로 한국계 중국인, 중국, 미국의 순서로 국적을 갖고 있고, 여성이주민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순의 국적을 갖고 있다. 한국국적이 없는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은 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로 2005년부터 한국 남성과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이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이혼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주민의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이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 부유한 남성을 찾아 이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성불평등적 구조 속에서 여성의 빈곤화가 가중되어 여성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취업 의사가 높으며 돈을 벌어 친정 가족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국내 입국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결혼비자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2

국제결혼과 여성이주민의 인권침해

우리나라로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인신매매적 성격을 가진 국제결혼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권침해로는 결혼중개업에 의한 인권침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인

권침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국제적인 우려와 함께 개선 요청을 받고 있다.

가. 결혼중개업에 의한 인권침해

1) 결혼중개업의 인권침해

1990년 이후에 혼인적령기 남녀의 성비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워지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시아지역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국제결혼이 활성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에 집착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 배우자에 대한 허위 정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입국 후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개업을 통한 결혼과정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맞선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짧게는 3박 4일 또는 5박 6일 과정으로 배우자를 결정하고 결혼을 성사하는 과정이다. 주로 남성이 주도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결혼중개과정은 결혼 당사자인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돈을 들여 사오는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 구조는 결혼 후 갈등과 폭력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

2) 결혼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국가에서는 성급하게 결혼을 주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결혼중개업의 규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주로 「결혼중개업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에 대한 의무 규정으로 신고필증 게시 의무, 명의 대여 금지 의무, 계약 내용 설명 의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제결혼이 미성년자의 혼인, 집단맞선 등 여성인권 유린 등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 기속을 통한 매매혼 성격의 결혼중개를 금지시켰다. 또, 맞선당사자들에게 정신질환 여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등 상대방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현지공증인에 의한 공증절차를 도입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나. 가정폭력

1) 국제결혼가정 내 폭력 현황

결혼이주여성가정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알코올 중독 증상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는데 주로 배우자의 폭행, 상해, 변태적 성행위 강요, 돈을 벌어들 것을 강요하거나 본국으로 추방하겠다는 협박 등이 있다. 혹은 결혼 이주여성을 돈을 주고 사왔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함부로 대하여 시부모 등 가족까지 개입한 학대를 하는 경우, 이주 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빌미로 국적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괴롭히는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를 무시하며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불만을 제기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가정 내 폭력이 존재한다. 국제 결혼가정의 부부폭력은 국내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높으며 한국국적 취득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90%이상으로, 결혼 후 2년 이내에 주로 가정폭력을 당하게 된다.

2) 국제결혼 가정 내 폭력 발생 이유

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배우자는 무능하거나 여성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부부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대화를 통한 소통이 어려워 불만이 누적되며,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차이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부간 기대격차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이 그냥 당하고 있거나, 자리를 피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류 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불안정한 체류자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여성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요건으로 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정 내 부당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결혼이민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그 후 2011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안정성은 전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은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 이혼,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여전히 심각한 체류자격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경우 폭력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만 체류자격을 확보할 수 있고, 남편 가족과의 갈등이나 성격 차이 등이 이혼사유가 될 때에는 체류자격을 보장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주비자에서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방문동거비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만료와 함께 출국하거나 미등록이주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2) 이혼으로 인한 체류자격 상실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출국대상이 된다. 단, 간이귀화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생활의 안정이 어렵고, 한국인 남편에 견주어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을 원인으로 간이귀화를 하기 어렵다. 실제 이혼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신분임을 이유로 또는 자녀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개 면접교섭권만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국적법」상 자녀양육권 없이 면접교섭권만을 갖는 경우에는 명시적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갖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체류연장이 불허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장 상담 전문가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의 취득과 변경은 관할 법률 이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담당 지원별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때, 담당자의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내부지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3 관련 진정사례

가. 국내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인권위 2011. 8. 26. 11진정0173200 결정)

H씨 : 저는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아내는 국내에서 체류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내이름으로 차아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국내체류기간이 전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보험회사 : 표준청약서의 건강고지 문항을 보면 최근 5년 이내의 질병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려 보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체류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병·의원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보험 승인 절차를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최근 5년 이내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 가입 요건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에 장기체류를 한 후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5년의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나. 베트남 출신 여성에 대한 결혼 현수막 제시 (인권위 2010. 11. 29. 10진정050400 결정)

어느 날, A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으로 베트남 결혼 980만원 가격할인행사”라는 베트남 출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시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 현수막이며, 동 업체의 대표자가 지정 게시대에 광고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요지의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현수막에 인종차별적 내용도 있어 현수막을 조기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국제결혼중개업이 성행하면서 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현수막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현수막은 돈만 있으면 베트남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베트남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와 제4조가 “민족적 근거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A시가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현수막의 게시신고를 수리하여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생각해 보기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 본다.



예시

중개업체의 거짓 정보 제공 금지, 투명한 결혼 중개 등에 대한 국가가 엄격히 규제하고,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또한, 혼인 해소된 여성에 대해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자녀면접교섭권이 없거나 자녀가 없다는 것이 체류자격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체류자격 변경판단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체류자격 심사는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한다. 그리고, 결혼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과 생계지원, 재활프로그램 등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한다.



문제 풀기

1.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공통적으로 권고했다. (O , X)
 - 정답 ○
 - 해설 :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응 교육에 많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으나,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2. 결혼이주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상실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 (O , X)
 - 정답 : ○
 - 해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출국대상이 된다.

3.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중개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O , X)
 - 정답 : X
 - 해설 : 국제결혼중개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했다.



정리하기

- ◆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며 결혼 후에도 한국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 ◆ 전체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이혼 또한 전체 이혼 대비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중개업, 가정폭력, 불안정한 체류자격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제결혼이 해소되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은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진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체류자격 부여, 결혼관계 의존적인 체류자격 부여, 이혼한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불투명한 출입국행정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지도·관리, 국제결혼이 해소된 이주여성의 체류보장방안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관련 법 및 정책 마련, 체류자격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 등이 요청되고 있다.

제10강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과 인권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3.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제10강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과 인권



생각해 보기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에 대해 적어본다.



예시

이주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인과 다른 생김새, 말투,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혹은 다문화 가정 출신 이라는 이유 등 이주아동이 갖는 특징이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습목표

- 이주배경아동·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알 수 있다.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학습과정에서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은 자신 혹은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 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난민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생과 이주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한국에 입국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인권기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고유한 문화와 경험이 발달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자녀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으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0년대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9세~24세 아동·청소년 중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이 4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이민배경자녀 재학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주요 영역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을 가지며, 이들은 다시 ‘보편적 인권’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양육 받을 권리, 가족재결합의 권리, 유해환경으로 보호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

이주아동·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는 이주 상황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 부재, 가족생활과 가족재결합 제한, 구금, 억류, 아동권리 보호체계에서 제외, 출생등록의 제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제한, 착취, 학대, 매매 등의 위험 등이 있다.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무시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주배경 아동의 의사표현이나 자기의사결정은 언어상의 곤란, 인종적 차별 및 따돌림 등 여건상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이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출산한 자녀를 모국으로 보내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는 상황과 한국에 입국한 지 몇 년 동안 모국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들은 양육권이나 가족결합권 등을 침해한다. 게다가 이들은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다행히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언어상의 문제나 학급 교우들과의 문제, 학교규율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현황

1)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아동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했지만, 적법한 비자나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등록 체계 안에 있지 않은 아동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자로 살고 있는 아동을 지칭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난민 인정 이전인 난민 가정의 아동 등이 해당 한다. 국내거주 난민 아동의 50%에 해당하는 아동이 무국적 상황이다. 속인주의를 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구청 등에서 기타 등록의 형태로 등록은 가능하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본국 대사관을 통해 등록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국의 박해를 피해 제 3국으로 이주한 난민의 특성상 대사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출생등록을 하기란 어렵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도 본국 대사관 접근이 쉽지 않거나,

미등록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 과다 비용 등의 이유로 본국 대사관에조차 출생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어 무국적 상태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2)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과는 달리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나, 이들은 청소년기에 낯선 곳으로의 이주와 적응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기도 한다. 특히 한국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친척, 친구 등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 상실에 따른 외로움, 새로운 가정에 적응에 따른 혼란, 스트레스가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진입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과 학교 아이들을 사귀는 것, 어려운 가정형편 등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 중도입국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이주배경청소년은 학령기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학교 진입이 어려워, 본국에서 학업 중단 상태로 입국하는데다 언어소통도 되지 않아 취업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이들 청소년들이 일용직, 임시직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다문화 가정아동·청소년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아동·청소년은 2014년 기준 약 20여 만명 정도이며, 이들 중 미취학 아동은 약 60%, 취학연령 아동 수는 약 40%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대개 한국 국적자이므로 학교 입학과 진학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4분의 3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은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친구 문제로 인한 고민이 높고, 친구가 적다 보니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비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친구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약 40%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1)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 현황

2001년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초·중학교입학을 허용하고, 입학 시 출입국증명서류를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사실인우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이주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형편, 한국어를 포함한 학습능력 부족, 학교의 전·입학 거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 또한, 이주아동·청소년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발음, 피부색,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수업료 부담,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 진도, 미등록 이주민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2)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인권위 2011. 2. 16.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교육부 장관에게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 강화, 전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 관리감독 강화,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초·중학생 재학 미등록 아동의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돼도 학생과 부모에 대해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여 중학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등록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을 고등학생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 이주아동·청소년의 의료권

1) 이주아동·청소년의 의료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할 이주아동·청소년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통보의무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 바 있으나,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2011. 11. 1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을 실시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를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및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1)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인권위 2012. 9. 3. 12진정0338800 결정)

S씨 : 대만 국적의 화교 3세로 6학년생 B의 아버지입니다. B가 같은 반 학생 H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 : 학생 간 쌍방폭력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폭력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인종 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짱깨”라고 발언한 H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학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2)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강제퇴거(인권위 2013. 6. 24. 12진정0835300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등학교 1년생 A를 경찰로부터 인계 받은 후 같은 날 오전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했고 몽골로 강제 퇴거시켰다. 출입국관리소는 A학생은 가짜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여 장기간 불법체류 중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체류허가 기간이 지났으며, 면담 시 이의신청제도 등 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학생의 대리인이 최종 결정하여 A학생이 출국한 것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심사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한다는 설명이나 보증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던 점, A학생 및 참고인들이 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이 이의신청 및 보호일시해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에게긴요한 교육 지속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학생의 일에 대해 출입

국사무소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담임교사가 진술하는 점, 출국 이후의 A학생에 대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충분히 고려했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A학생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출입국사무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및 부모와 분리 금지 규정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되어 보호될 경우에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3)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인권위 2006. 8. 29. 04진차386 결정)

D씨 : 대한민국 내에 있는 화교 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교육부 :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문제는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해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외국인학교 재학생에 대해 학력을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화교학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외국인학교제도 자체의 문제이며, 학력인정은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는 제도적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특정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소수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 다른 나머지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문화, 언어와 종교를 향유하고 누릴 권리, 특히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후세에게 교육시킬 권리는 하나의 인권으로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화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고자 설립한 화교학교에 관해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 학업을 마치고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출신국가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기준

가.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조건 없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협약은 비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생존발달, 출생 등록권, 부모를 알 권리, 양육 받을 권리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상의 건강 수준 향유권 및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 사용권, 제교육권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등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존중할 때 이주아동·청소년도 역시 비자 유무, 인종, 국적, 부모의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보호받아야 한다.

나.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최근 몇 년 동안 유엔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중점 조사와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09년 유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의 보호’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이주의 전체 맥락에서 조망하면서, 이주 전체 과정에서 ‘모든’ 이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각 국 정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보고관은 이주아동·청소년들을 보호자나 후견인이 이주하여 보호 없이 거주국에 남겨진 아동, 아동 스스로 이주 중인 이동 중인 아동, 그리고 목적국에 있는 아동으로 구분했다. 또한, 목적국에서 이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방안은, 첫째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정책을 주류화하기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정책기조로 채택할 것, 둘째 이주정책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특히 가족 재결합의 원칙을 이행할 것, 셋째 이주 지위와 관계없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며, 특히 목적국 정부가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에

대한 귀환은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기반해서 결정할 것, 넷째 가족결합의 원칙은 이주노동자인 성인의 관점이나 사회의 관점보다는 이 모든 결정에서 어떤 결정이 아동에게 최선인가를 고려할 것, 다섯 째, 가족결합의 원칙 이외에도 이주와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아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주의할 것 등 이다.

다. UN 교육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민, 난민, 비호자의 교육권에 관한 보고서’를 2010년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경을 넘은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주민, 난민, 비호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의 주류 언어 습득을 돕기 위한 개별 교과과정이나 일대일 지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필요할 경우 주류 언어 학습과 함께 교과목 수업을 병행할 것, 그러나 이 과정을 분리한 적응 그룹이나 별도의 학급 개설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이주민 인구의 필요에 따라 이주민의 언어로 제공할 것.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교육접근 정도와 교육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 때 언어향상과 언어관련낙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이전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한 언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라. 우리나라 이주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한국 이주아동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살펴보면, 첫째 무국적 상황 방지를 위해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다. 이는 아동의 무국적 상황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셋째 교육권의 보장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개발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기

무국적자가 되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유엔은 무국적자가 되는 아동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가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등재하게 하는 자동등록제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문제 풀기

1.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적용되는 협약이며,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O, X)
 - 정답 : X
 - 해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체류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
2.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중등학교에 전·입학하는 경우 전월세계약서 혹은 이웃의 거주확인보증서를 제출하여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학교 전·입학이 가능하다. (O, X)
 - 정답 : O
 - 해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이하 중략)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미등록 이주아동임을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의 출입국사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O, X)
 - 정답 : O
 - 해설 :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정리하기

- ◆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은 자신 혹은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중도입국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하며, 이들 중 다수가 17세 이상의 연령으로 청소년기에 낯선 곳으로의 이주와 적응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겪기도 한다.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보편적 인권을 가지며,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인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은 이주상황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 부재, 가족생활과 가족재결합 제한, 구금, 억류, 아동권리보호체계에서 제외, 출생등록 제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제한, 착취, 학대, 인신매매 등의 위험 등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한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유엔인권협약기구 등 우리나라의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출생신고제도 개선, 의료권 및 교육권 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다.

제11강

재외동포와 인권



1.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사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법령 및 제외국의 사례
3. 진정사례



생각해 보기

직접 경험하거나 뉴스 등을 통해 접한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어본다.



예시

-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와 CIS(과거 소비에트 연방국가)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되지 않아, 이들 동포는 자유 체류를 할 수 없다.
- 방문취업제도는 기간 제한과 취업분야도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 사람들이 재외동포들의 국적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한다.
- 소득수준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실업상태, 직업훈련 시 혜택 받기가 어렵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보육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 국민연금을 10년 연속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서 취업하기 어려우며,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 가사사용인과 간병인으로 일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습목표

- 재외동포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법령을 설명할 수 있다.
- 외국국적 동포의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재외동포의 현황 및 역사
- 재외동포 관련 정책, 법령 및 제외국의 사례
- 진정사례

가. 재외동포의 정의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조상을 가졌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본인이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란 한국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국의 시민권인 동포를 뜻하는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으로 취득한 자를 원칙적으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여, 이 둘을 합해 재외동포라고 한다.

나. 재외동포의 현황

재외동포는 세계 176여 개 국가에 약 700만 명이 있다. 재외동포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9개국을 가리키는 CIS 순으로 많으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재외동포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는 약 45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의 약 730만 명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는 전체 이주민 인구의 과반 수가 넘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 무국적자, 미등록이주민 등 거의 모든 이주민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재중동포는 국내체류 동포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다. 재외동포의 역사

일본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징용한 200만 명의 한국인은 한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귀국을 서둘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중 60만 명이 일본에 남게 되면서 재일 교포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재미교포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생겼다. 연간 2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캐나다로 이주도 시작됐다.

다음으로, 유럽교포는 1962년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가 계약노동자로 이주하면서, 대부분 계약만료 후 독일에 남아 계속 취업하거나, 독일 이외의 나라로 분산되면서 생겼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및 중국교포의 경우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로 징용 및 이주 당한 사람들이 많으며, 광복 이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한국에 귀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라.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경제적인 역할을 한다. 재외동포는 무역과 모국 송금 외에 우수한 노동 인적 자원 공급 등의 방법으로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 초부터 많은 재외동포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및 국제협력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더욱 밀접하고 역동적인 기능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개 작용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초국경적 협력에서 한국 주변 열강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과 각 주변국가들 사이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

이제 재외동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큰 변화의 흐름을 맞고 있다.

먼저 새로운 이주형태의 등장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는 다른 해외이주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활성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주규모가 증가했고,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자녀교육, 투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주하거나 필리핀, 피지 등으로 이주하는 연금생활자 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재외동포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확산과 변화이다. 여행, 유학,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국민의 해외출국 및 거주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시민권, 영주권자 등 이민자는 정체 중이지만 일반 체류와 유학생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외동포가 과거에 거주

국에 이주 후 거주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양상을 탈피하고, 거주 국가 모국을 중심으로 순환 이주하면서 체류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2012년 참정권을 허용하면서 전체 유권자의 6%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선거에 참여하여 대선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또한, 재외동포의 경제력은 100조 원 정도의 무시하지 못할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유학생과 재외동포가 한류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재외동포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법령 및 제외국의 사례

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정책

1) 1990년대 이전

1990년대 이전에는 재일·재미교포 관리정책의 수준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관한 정책이 부재했다. 또한, 일부 재중동포는 친척방문 등으로 입국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무역을 함으로써 미등록 체류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2) 1991~2000년대

1991년부터 2000년대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 유입이 급증하고, 점점 중국동포의 친척초청 범위를 확대했으며,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미등록 상태의 노동자로 국내에 체류하기 시작했다. 1999년 「재외동포법」을 제정했는데, 중국동포와 러시아 등 CIS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2001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2001년 이후 2002년 취업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2004년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2003년 미등록 체류자 사면정책, 2005과 2006년 동포자진 귀국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동포의 미등록 체류율을 낮췄다. 2007년에는 방문취업제를 신설하여 만 25세 이상의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사증 유효기간 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했다. 또한

이들은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중국동포, CIS동포 등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나. 재외동포 관련 법제

1) 헌법

「헌법」은 전문에서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또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하여,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시한 것이지만, 재외동포 관련 개별법은 우리나라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 재외동포 관련 개별법

재외동포 관련 개별법으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각 개별법은 각각 재외동포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 재외동포 사업에서도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재외동포재단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은 지구촌 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 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

와 활동영역의 국제화, 세계화를 이끌며, 재외동포의 모국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재외동포법」은 주로 출입국과 체류의 자유 보장, 취업 및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국내 토지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 가능, 국내 금융기관 이용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 90일 이상 국내 체류 시 의료보험의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 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의 증진,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의 재외국민등록의무를 규정해 두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성립,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기타 재외동포 관련 개별법」

「해외이주법」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병역법」, 「공직선거법」, 「외국인토지법」 등에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재외동포의 인권침해 유형

재외동포의 법적 대우를 규정한 다양한 법령 및 정책이 존재함에도 재외동포들은 국내 생활에서 차별대우나 인권침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재외동포법」의 차별 적용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가수립 이전과 이후로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모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이주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중국동포와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는 전면 시행하지 않았으며, 과도기적으

로 방문취업제를 병행하여 시행했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법」의 자유 체류 규정과는 달리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규정하고 취업분야도 38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의 거주권과 노동권은 보장하지만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을 제한했다.

2)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

한 동포는 “동포라고 그러면 더 무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살아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라고 했다. 2009년 법무부가 시행한 「재외동포 체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중국 및 CIS국가 재외동포가 한국생활 애로사항 중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 차별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무려 67.3%를 차지했다.

3) 사회복지혜택의 부재

2009년 법무부가 시행한 「재외동포 체류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중국 및 CIS국가 재외동포의 54.8%, 일반 재외동포의 36.5%가 한국생활 애로사항 중 병원이용·의료보험 및 복지혜택을 꼽았다. 외국국적동포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이 산정한 외국인 평균 보험료를 적용했다. 따라서, 소득수준보다 훨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대상으로서 실업상태, 직업훈련 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기준에 외국국적의 재외동포 가족은 배제되므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동포 가족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했다. 예컨대, 다문화 가족 자녀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반해 국내체류 동포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부모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가 국민연금 10년 연속 납부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포가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동포의 경우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노동현장에서 법적 보호 미약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함으로써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가사사용인과 간

병인으로 일하는 동포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법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서 근로하고 있다.

라. 제외국의 사례

일본은 1994년 「중국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 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중국 잔류 고아들에 대한 귀환과 정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자발적인 이민자인 브라질계 일본인에게도 1990년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3세까지의 일본인과 그 가족에게 사실상 취업상의 제한이 없는 정주시증을 발급했으며, 중국 및 브라질 일본인 자녀들에 대한 대학특례입학 등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은 「기본법」 제116조에 근거해 193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독일제국 국민이었던 외국 체류자의 전면적인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들은 바로 독일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귀환에는 그들의 가족도 포함되며, 독일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상 언어교육을 실시했다.

3

진정사례

가. 재일조선인 국적 취득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위 2009. 12. 1. 09진인2583 결정)

B씨 : 저는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입니다. 한국으로 유학가기 위해 한국 영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려 했는데, 영사가 '이유서' 서류에 한국으로의 도항 목적 뿐 아니라 국적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적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뷰를 하면서 국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여행 증명서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향후 한국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학에 대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더니 발급 불허 결정이 났고, 다시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불허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영사관 : B씨가 한국유학입학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 유학을 위해 정식 여권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여권 취득을 위한 국적 변경 절차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녹취록을 확인하여 영사가 B씨에게 국적 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하고 국적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B씨는 외국거주동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를 향유한다. B씨는 재일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에 입각하여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는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공관에서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전환을 강요 또는 종용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나. HIV 항체양성반응자에 대한 출국명령취소소송에 대한 의견 제출 (인권위 2008. 2. 18. 결정)

중국동포 : 저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한국인인 어머니의 초청을 받아 체류자격 방문동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했고, 같은 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국적 동포 취업교육 도중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관할 보건소로부터 HIV항체 양성반응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피고 출입국사무소는 저를 외국인보호소로 보내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허가 여부는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사 외국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전염병 환자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HIV감염인은 강제로 출국시켜 왔으며, 간혹 예외적으로 내국인 배우자인 경우, 조사 중인 경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체류를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으로 원고인 중국동포가 입게 될 침해들을 파악했다. 첫째, 원고는 입국금지대상자로 국내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며 HIV가 완치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격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거의 박탈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HIV감염인 중에도 내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와 배우자를 달리 대우해야 할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원고가 출국하면 중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및 격리수용 정책으로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원고의 건강 및 생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소지가 많으며, 국내에서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즉, 원고를 우리나라 밖으로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최대한의 침해할 초래하여 강제퇴거의 공익보다 원고의 침해가 불균형하게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과 HIV감염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 이혼소송 중 부당한 강제퇴거(인권위 2005. 5. 23. 04진인0968 결정)

K씨: 저는 중국동포입니다. 한약도매업을 하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2000년 중반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2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나 남편이 중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미등록 체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벌금을 지참하고 벌금을 납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려고 하던 중 거주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K씨는 타 지역 지방법원 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 계류 중인 자로 우리 도내에 거주하면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경과했으며, 출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출도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보호소 보호 중 본인의 심경변화로 이혼소송 절차 일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출국하기를 희망한다고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의 각종 서류 기재 사항을 통해 당시 K씨가 이혼소송을 위임한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벌금 100만 원과 사유서, 신원보증서, 소송증명 서류를 갖추던 상태였다는 것과 출입국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직원도 K씨가 이혼 소송 중이며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를 강제퇴거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K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단속 당일 작성된 K씨의 용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도움 요청, 12일 동안의 보호소의 보호 등을 감안하면 K씨의 자유로운 출국의사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K씨가 「국적법」에 의한 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강제퇴거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3년간 입국규제를 하여 귀화신청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K씨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라. 중국동포 배우자 입국 금지(2003. 9. 8. 03진인0931 결정)

○씨 : 저는 중국동포인 A와 교제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던 A는 혼인을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자진신고하고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한 후 출국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달 후 A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지만 A의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5년간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 법무부 지침인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자 사후 관리 방안」에 의거하여 입국규제 5년의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입국 규제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허가 기준은 대한민국 및 해당 국가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지 1년이 지나야 입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위장결혼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결혼관계가 일정기간 유지된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입국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입국규제대상이고 사증발급신청 요청 당시 지침상의 기준이 미달되어 불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국민이 미등록 외국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가로 출국하여 배우자의 부모 및 친지에게 허락을 받은 후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일률적으로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가정 보호 의무에 위배되므로, 입국규제자라 하더라도 법률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면 1년의 경과기간 없이 혼인의 진정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국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인권침해 없이 생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어본다.



예시

- 「재외동포법」을 중국 및 CIS 지역 동포에게도 전면 적용한다.
- 원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을 간소화한다.
-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외국국적 동포의 가족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육비 등을 지원한다.
- 소득수준에 맞도록 지역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
- 고용보험 적용 등을 의무화한다.
- 가사노동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나 산재 발생시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받기 위한 간이권리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장 가입자로 소득수준에 맞는 건강보험 가입절차 마련한다.



문제 풀기

1. 재외동포 관련 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각 다르다. (O , X)
 - 정답 : O
 - 해설 : 재외동포 관련 법은 그 제정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인 재외동포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외국국적의 동포가족에게도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O , X)
 - 정답 : X
 - 해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부부 중 일방이나 부부 모두, 또는 자녀 등이 한국국적을 가질 것을 요구하여, 외국국적의 동포가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3. 중국동포와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국가(CIS)의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제는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규정하고 취업분야도 38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거주권과 노동권은 보장하지만,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은 제한하고 있다. (O , X)
 - 정답 : O
 - 해설 : 재외동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중국동포와 과거 소비에트연방의 국가(CIS)의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방문취업제는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규정하고, 취업분야도 38개 단순노무업종으로 제한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의 거주권과 노동권은 보장하지만, 실업구제, 복지혜택, 가족결합권 등은 제한을 명시해 두었다.



정리하기

- ◆ 재외동포의 수는 약 720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CIS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재외동포 수의 90%를 차지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는 전체 이주민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며, 이중 87.2%는 재중동포로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이주, 징용된 후 정치적 이유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가 많다.
- ◆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1990년대 이전에는 전무한 상태로 대부분의 동포는 미등록으로 일했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외국국적동포가 급증했다. 1998년 「재외동포법」 제정, 2003년~2006년 미등록 동포의 사면 및 재입국,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의 단계로 점차 외국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문호를 넓혔다.
- ◆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적용,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복지혜택의 제한,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겪고 있다.
- ◆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 간소화,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 외국국적 동포의 가족도 포함, 지역건강보험료 조정, 고용 보험 적용의 의무화, 간이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이 요청되고 있다.

제12강

이주민과 행정



1.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2. 단일문화 근거들의 행정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3. 진정사례

제12강

이주민과 행정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토대로 하는 행정체제는 이주민에게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본다.



예시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에 근거한 행정 체계가 고수되는 경우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이주 법제의 간극으로 인한 인권 침해, 이주민의 법적 인격 미 확립으로 인한 인권 침해, 공무원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정 담당자의 취약한 인권 및 다문화 의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단일문화 근거들의 행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 단일문화 근거들의 행정 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 진정사례

가. 인권친화적인 이주 행정의 중요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통적인 ‘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을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인권의 주체는 ‘모든 개인’으로 이주민 역시 이론상으로는 여지없이 인권의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이주민의 인권은 보장받기 어렵다. 이는 ‘인권’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구조에 속박되는 탓에 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제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모든 개인’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 주권의 제한성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국가 주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사람으로 확장하는 과제와 직접 연결된다. 즉, 이 과제의 핵심은 국적이 있는 국민 중심의 전통적 행정 틀을 인간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행정 틀로 전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의 책무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행정이란 ‘국민’ 혹은 ‘민족’의 ‘표준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국정 수행을 위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개념화된다. 또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익의 실현’으로 이는 ‘모든 국민의 인권 구현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비국민 규모가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 주권 및 국가책무성”의 대상은 국민으로만 제한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책무의 대상 집단으로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 근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제도적 인종주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행정 근거틀 구축을 가로막는 장애물에는 ‘국민 중심’의 법제, 이주민 관련 법제의 미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 문화적 무지와 관련된 제도적 인종주의가 있다. 2010년 안산 지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주민 인권 실태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자’로 ‘공공기관’을 선택한 응답자는 5.6%였다. 반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알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서구의 경우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이 인종 분규의 촉발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로드니 킹 사건은 1991년 3월 미국 LA에서 과속 운전하다 도주하던 흑인을 백인경찰이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TV에 나간 후에, 경찰관들이 기소됐다. 그러나, 백인이 다수였던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평결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거세게 저항해 LA 인종분규를 촉발한 사건이다. 그리고, 트레이번 마틴 사건이 있다. 2012년 2월 미국의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Trayvon Martin)이 히스패닉계 백인 조지 짐머만(George Zimmerman)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비무장 상태의 트레이번 마틴이 권총으로 살해당했으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조지 짐머만이 2013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흑인사회는 인종차별이라고 반발하고, 항의운동을 전개했다.

2 단일문화 근거들의 행정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이주민 법제의 간극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제 사회에서는 이주민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의 초점에 따라 ‘글로벌리스트’와 ‘제한적 주권론자’ 사이의 논쟁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이주행정이 국제적, 국내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이주민 관련 법제와 정책담론은 여전히 국내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로 인해 한국사회에 이주민 차별적인 인종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경쟁력보고서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 분야에서 2008년에는 55개 조사 대상국 중 55위, 2009년에는 57개 조사 대상국 중 56위로 평가되었다.

나. 이주민의 법적 인격 미확립으로 인한 인권침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법적 인격’이 있으며, 법 앞에서 평등하고, 비차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세 가지 맥락에서 이주민의 법적 인격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에서 법적 인격을 ‘국민’으로 표현함으로써 외국인을 배

제하고 있다. 둘째로, 외국인 관련 법제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외국인 집단들인 미등록 이주민과 무국적자, 외국인노동자 가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지위의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인격으로 처우 받지 못하고, 자치단체 교부금 배정의 기준에서도 이주민 인구의 규모는 제외되고 있다.

다. 재량권 남용과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1)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문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 근거들에서 운영되던 업무 관행을 고수할 때는 정책 공백과 재량권의 남용과 같은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특히, 재량권의 남용이 지속되는 경우 공직사회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기관과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체불입금수급 사유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유예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한 거라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일이든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기관에 가면 얼마 내놓으라 그러고, 다른 기관에 가면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꼭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디에다 맞춰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담당 공무원들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는 현실, 이런 것이 굉장히 헛갈리고 짜증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2)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유기적으로 통합된 행정 추진체계의 미비는 인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분리시켜 서비스의 중복과 대상의 누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현실 세계에서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등의 인위적인 범주 구분은 상당히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난민들 역시 노동자이자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집중되어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이주민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추진체계의 혼재로 인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피해 집단 가운데 하나는 예술홍행공연 비자 소지자들이다. ‘예술홍행공연자’들의 주무 부처로 외국인 연예인 파견근로업체의 허가 및 근로계약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감독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공연 추천 및 비디오 심사 업무는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성매매 피해 신고는 경찰수사기관 등으로 무려 5개로 분산된다. 이렇듯 관련 부처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탈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예술홍행공연 비자를 가진 이주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위협, 임금 착취,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빈곤 등 심각하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 주무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행정 담당자의 취약한 인권 및 다문화 의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

공무원은 인권주체와 직접 대면하는 국가의 기관이다. 따라서 인권친화적인 이주행정을 구축에서, 이주민 인권침해와 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담당 공무원의 인권 및 다문화 의식 미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는 몇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 문화적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대표적인 사례가 네팔 출신의 이주여성노동자 ‘찬드라’씨 사건이다. 네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찰 공무원의 문화적 무지로 인해 찬드라씨는 행려자, 정신질환자로 오인되어 무려 6년 4개월간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감되었다.

2)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초래되는 인권침해

미등록 이주민을 ‘잠정적인 범죄자’와 동일시하거나, 난민이나 무국적자를 ‘비겁한 도망자’정도로 간주하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3) 초국적 관점의 빈곤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무허가 결혼중개업체나 외국인 연예인 알선업체에 의해 이주 여성이 인신매매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초국가적 공간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인해 단순 성매매에만 수사 초점이 맞춰져, 한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성 인권침해 여부는 수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진정사례

가. 권고사례

1) 수사행정 : 인종차별적 수사(인권위 2010. 5. 31. 09진인3104 결정)

외국인 A씨 : 한국인에게 인종차별 및 모욕을 당한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인종차별적 발언 및 조사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 A씨가 오해한 것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경찰은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며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는 인종과 사회적 차별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으며, 정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상당기간 외국인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내국인 보다 나이가 많은 이주민 피해자에게는 반말투의 언행으로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인종차별금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 대우에 대한 차별대우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 수사행정 : 부당한 임의동행(인권위 2008. 9. 22. 07진인4605 결정)

외국인 B씨 : 밤 9시경에 경찰 4명이 집까지 들어와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지구대로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연행사유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고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고, 이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 B씨가 동료외국인들을 전화상으로 괴롭히는데 미등록 이주민 여부 확인 후 조치를

해달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자의 통역 하에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B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신고자를 통해 고지했으며, B씨가 임의동행에 동의했습니다.

신고자 : B씨는 주변 필리핀 사람을 한 달 이상 협박했으며, 제가 경찰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B씨에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씨와 같이 여권을 보여줄 것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도 경찰이 불법 체류 사실 확인만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권한은 없으며, 권한 없이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과 임의동행거부권 미 고지행위는 「헌법」 제 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3) 출입국관리행정 :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과잉단속
(인권위 2012. 7. 10. 12진정189800 결정)**

외국인 H : 오후 5시 30분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합법체류 외국인 A씨와 B씨를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A씨와 B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강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도망가려 했고 신분 확인의 어떤 증서도 가지고 않아, A씨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B씨는 수갑 없이,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집행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법체류자격을 갖고 작업 중이던 A씨가 강한 저항 행위가 없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수갑을 채워 회사기숙사까지 이동시켰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7조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할 것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므로, 수갑 등의 장구 사용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갑을 사용한 이 사건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4) 출입국관리행정 : 합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단속
(인권위 2008. 10. 27. 07진인4701 결정)

한국인 N씨 : 17시경 방글라데시인 2명과 이슬람사원에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7~8명의 단속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숨을 쉴 수 없게 입을 틀어막고 몸을 포박한 뒤,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속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단속과정에서 한국인임을 확인하고도 1시간 가량 후에나 풀어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국가정보원 : 테러단체 수뇌부로 활동중인 S씨를 단속하기 위해, 예배 장소인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S씨와 함께 나오는 N씨 등 2명을 미행과 길목 차단의 방식으로 단속했습니다. 단속 장소가 이슬람 사원 근처라 동료 외국인의 동요가 우려되어 2km 지점 공영주차장에 이동 후 N씨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한국인임을 확인했으나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 가량 소요되어 같은 날 19:00경 차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참고인 : “나 안가, 불법 아니에요. 나 신분증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단속직원들이 “알았어, 알았어. 먼저 차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N을 단속하면서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차에 데려갔으며, 차 안에서도 단속사유에 대해 설명도 없이 신분증을 보고는 위장결혼이라고 주장하며, 아무 설명 없이 역으로 이동한 후 얼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고 기도원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반원들이 미란다 원칙의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긴급보호사유 설명 등도 하지 않은 채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테러범의 경호원으로 오인하여 체포하고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진정인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5) 출입국관리행정 : 소명절차 미보장으로 인한 피해
(인권위 2008. 12. 20. 08진인1422 결정)

외국인 J씨 : 클럽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소속 기획사 대표가 시키는 대로 다른 클럽에서도 일했지만 또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클럽 2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속기획사에서 사업장 이탈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장 이탈 신고 이후 미등록 신분이 되어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출석하면 강제퇴거 당할 우려가 있어 출석 못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사의 사업장 이탈 신고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항변권을 보장하며 기획사의 불법적 운영 행태를 점검 및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호 장치라고 했다. 외국인이 강제퇴거의 위협을 무릅쓰고 임금채불 등 기획사의 여타 불법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실질적 항변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호텔유흥 사증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 신고 시 소명절차 보장 등을 포함하는 「호텔유흥 사증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 출입국관리행정 :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한 자녀의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인권위 2005. 2. 28. 05진인0003 결정)

한국인 M : 중국동포인 아내와 결혼을 했고, 당시 아내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 딸에 대한 자녀포기각서를 쓰고 결혼했고, 현재까지 중국에서 외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입양하기 위해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입국관리소에 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처남 및 처남댁의 불법체류사실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불허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M씨의 처남과 아내들이 불법체류 중인 관계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관리지침」에 의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출국 후에 M씨가 재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재심사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억제는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불허 요건은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정부모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친정부모가 출국한 이후 재신청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M씨의 처남과 처남댁의 불법체류를 사유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은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보호 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씨와 아내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입양 딸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며 한국의 부모와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불허 처분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7) 출입국관리행정 : 이란인 남편의 결혼비자 발급 불허 사건
(인권위 2005. 8. 31. 05진인0115 결정)

C씨 : 이란인과 결혼 후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고 호적에 등재했으나 법무부에서는 남편의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 일부다처제 국가의 국민이 한국인과 혼인하려 할 때, 일방의 혼인성립요건만 갖추면 혼인을 인정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본국에서 이미 결혼했을 수도 있는 사람도 한국인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체류자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한국의 공서양속 및 한국정서에도 맞지 않고, 혼인 이후 이혼이나 상속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국내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을지라도, 이란대사관에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이란인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나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혼 여부나 진정한 혼인 성립 여부도 알 수 없는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자녀 교육상의 문제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이란인 남편의 불법체류상태를 해소하고 합법적으로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가족동거체류자격 부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씨와 남편의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의 진정성이 분명함에도 남편의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남편에 대한 사증발급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36조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란인 남편이 이란으로 다시 출국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배우자 자격의 사증 발급을 하도록 권고했다.

8) 출입국관리행정 :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인권위 2007. 4. 11. 06진인2979 결정)

L씨 : 파키스탄 남편과 혼인한 뒤, 뒤늦게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알고 불법 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 납부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불허했으며, 조사자의 강압적 분위기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조사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보니, 성명불상 이웃주민이 ‘외국인 남자가 드나든 적이 전혀 없다’고 했고, L씨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주소지는 ‘외국인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씨도 조사과정에서 ‘남편과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L씨 부부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주소지의 이웃들이 L씨 부부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현 주소지는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집주인이 이들의 동거여부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L씨 부부의 혼인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L씨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여 출국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은 L씨 부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족재결합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L씨 남편이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9) 교정행정 : 교도소내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2003. 3. 21. 02진인0150 결정)

P씨 : 예전 교도소에서 지금 교도소로 이송 후 외국인 처우를 해주지 않아요.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는 전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법무부 : P씨가 재이송을 원하는 전 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 중 특정국적 수용인원의 증가로 다른 외국수형자들과 갈등·대치 및 파벌화 경향의 위험이 있습니다. 원활한 수용 질서를 위한 것으로 P씨를 다시 재이송 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P씨는 재외동포이지만 우리말과 글이 매우 서툴러 외국인재소자 전담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의 수형생활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감된 지 2년 6개월이 경과되어 분리가 필요했던 상황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함이 매우 크므로, 「외국인 재소자 처우지침」에 따라 이국에서의 안정된 수형생활을 위해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해 줄 것을 권고했다.

10) 노동행정 : 외국인 사업장 변경 신청 불허(인권위 2005. 5. 23. 04진인3907 결정)

외국인 I씨 : 저는 원래 월120만원을 받고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했으나, 이런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종합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3차례 거절당해서 결국 미등록자로 전락했어요.

지방노동사무소장 : I씨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사업장변경요구는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복귀를 권유했고, 두 번째 방문 시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신고를 거부해, I씨에게 질병, 부상을 이유로 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시에는 I씨가 의사소견서를 지참했지만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거부되어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협조를 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에 I씨가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임금체불 진정서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고, 임금체불이 확정된 공문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사업장에 취업알선과 근무처변경 허가추천서를 발급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I씨가 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임금 체불 이야기를 하지 않아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I씨가 고용안정센터에 3차례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의사를 표명했던 것에 대해, 비록 I씨가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임금체불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담당 직원은 I씨가 외국인이므로 위 규정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침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신청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I씨가 임금 체불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외국인고용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I씨는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체류기간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못했고, 단체인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진정과 사업장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나. 기각사례

1)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기재 방식이 차별(인권위 2008. 4. 14. 07진인0957 결정)

외국인 A씨 : 한국국적인 아내와 결혼 후에도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 표기가 한글이나 한자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은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녀들의 통장개설이나 재산권 행사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은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신분확인증명서로서 동일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공적증명서에 기재된 영문성명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 국가가 발급한 여권상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재한 화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성명란에 영문과 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이름과 외국인등록증 영문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국내 부동산 취득등기의 경우 동일인 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금융거래에서도 신분확인을 입증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이름의 표기가 한국 정부가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한글과 달라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이 모국어로 완벽하게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이지만, 이는 언어체계의 상이함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모든 다국어를 국가 공식기록에 채택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그 불편함은 번역공증서 제출이나 배우자의 확인과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수단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 수의 증가로 외국인 신분증명 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관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2) 국적을 이유로 한 어린이집 대표자 등록 제한(2009. 5. 1. 08진차0202 결정)

재외동포 Q씨 :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하고자 했으나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자 인가를 거절당했습니다.

구청 :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이나 구체적 법률과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국인을 보육시설의 대표자로 인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Q씨와의 면담에서 알려주어 내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으로 볼 때, 영유아보육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서 그 운영의 공공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도 직업선택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가정책상 제한 될 수 있는 권리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보육시설 대표자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서 외국인 차별(인권위 2008. 3. 24. 07진차547 결정)

외국인 T씨 : 주한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으나,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확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부적 인증절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 직원입니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주한외국인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개 신용정보사를 통해 약 3,000여개 기관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업체의 경우 외국인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도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본인확인 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조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상 본인 확인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모사전송이나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서비스의무제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부가 외국인임을 이유로 직접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했다.

4)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인권위 2004, 3, 15, 03진차140 결정)

외국인 U씨 : 한국인 수용자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선풍기가 있는데, 외국인 수용자 거실에는 없습니다. 또 외국인수용자에게 점심과 저녁에 빵이 아닌 밥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도소장 : U씨가 수용되어 있는 2인용 거실 또는 독거실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TV의 수량 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며, 선풍기는 과밀 수용되어 있는 혼거실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을 최대한 존중하여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백미를 급여하고 내국인 수용자에게는 공급되지 않는 빵, 돈까스, 잼, 버터, 카레 등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외국인수용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의 미결 및 기결수용 혼거실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으나 2인용 거실 또는 독거실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주식으로 하는 곡류의 종류가 다르므로, 외국인식단표를 보면 생선까스, 카레, 야채크로켓 등 메뉴를 추가하는 등 외국인수용자의 식습관을 배려한 것으로 볼 때,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노동자 가족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적어본다.



예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법과 규범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하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의 경우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을 담당할 정부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이주민이나 출생한 이주아동에 대해 국적 등의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 풀기

1. 「헌법」은 이주민에게 한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O , X)
 - 정답 : X
 - 해설 : 헌법은 ‘국민’은 이라고 하여, 모든 권리에서 외국인과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권리 제한을 받는다.

2. 이주민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이유 중에는 행정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재량권 남용이 있다. (O , X)
 - 정답 : O
 - 해설 : 관련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이주민의 인권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의적인 법집행이 문화적 무지와 결합할 때 국가에 의한 인종주의의 위험성이 중복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동포와 결혼한 내국인이 미등록이주민인 친척들로 인해 입양한 아내의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 받은 진정사건에 대해 국제규약이 규정한 국가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정에 대한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줄 것을 권고했다. (O , X)
 - 정답 : O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8. 05진인0003 결정 참조.



정리하기

- ◆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전통적인 행정 근거들을 사람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행정 근거들로 전환하는 과제가 핵심이며, 또한 '제도적 인종주의'를 최소화하는 지속적 교육과 강력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
- ◆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단일문화 행정 체계는 이주민에게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이주 법제의 간극으로 인한 인권 침해, 이주민의 법적 인격 미확립으로 인한 인권 침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정 담당자의 취약한 인권 및 다문화 의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 ◆ 인권친화적인 이주민 행정 구축을 위해서는 이주민 행정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인권의식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규적인 공무원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3강

이주민과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법적 근거
2. 이주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3. 이주민의 사회보장체계

제13강

이주민과 사회보장



생각해 보기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을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어본다.



예시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학습한 대로, 미등록 이주아동은 외국인 등록조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부여하려면, 이주아동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주아동에게 등록 여부를 떠나 국적을 부여한다거나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아동에게 특히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학습목표

- 사회보장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알 수 있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설명할 수 있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사회보장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이주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 이주민 사회보장체계

가.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 조치로, 국민의 생존권 확보와 최저생활의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보장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장애 등으로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적부조는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 예산으로 보호해 주는 일종의 구빈 제도이다.

나. 법적 근거

「헌법」은 사회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은 사회적 취약집단의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제공은 그 사회에서 취약집단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국적에 따라서 그 대상이 확정되기도 하지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상시 거주지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초적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주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할 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적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난민지위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지난 사람 등은 국민연금의 당연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 등에 근무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이주민은 직장가입자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난민인정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가입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민은 가

입할 수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과 관련하여 이주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이주민이라고 보험 지급에 제한을 두거나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인 이주민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대상이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혜 대상에도 포함된다. 또한, 난민인정자, 난민지위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합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근로자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거주 체류자격을 받는 난민인정자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난민인정신청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주민과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수급권자의 조건이 되는 외국인이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난민인정자를 포함하여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지위 신청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바.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에는 이주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신, ‘난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민도 의료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결혼이주민과 난민인

정자를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난민지위신청자는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

3 이주민의 사회보장체계

가. 이주민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1) 영주체류자격 이주민

4대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일정한 범위에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영주이주민에게 인정되는 사회복지지는 결혼이주민이나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에 견주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 결혼이주민

적용 가능한 제도는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며, 「노인복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한 결혼이주민이 자녀의 양육권이 없고 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

3) 이주등록노동자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난민인정자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적용받으며,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5) 미등록 이주민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지만, 노동자인 경우에 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보장이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복지, 주거,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때, 이주민들에게 제한적인 사회보장은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앞에서 살펴 본 미등록이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 건강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외국의 사회보장체계

1) 미국

사회보장제도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이주민은 적어도 5년간 미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사회보장제도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2) 일본

국내의 평등 원칙에 따라 등록이주민에게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간호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생활보호법」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서 이주민의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는 영주권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민은 외국인 치료자격 여부 및 체류의 적법성에 상관없이 수급권에서 배제된다. 다만, 미지불의료비 상환제도와 같은 긴급의료지원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호주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이주민들에 대해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결혼이주민도 호주 시민과 동등한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독일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착이민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도 대부분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독일의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은 취업활동 여부와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보장 5부분인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 사고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보조금, 자녀수당 및 양육수당도 포함된다.

5) 프랑스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혜택을 이주민에게도 보장한다. 하지만 이주민은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이들만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의 경우 일반형식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여기에는 연금, 유족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수당 등이 포함된다.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는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등 직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미등록이주민과 본국에서 치료가 어려워 프랑스에서 의료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미등록 노동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일정 소득 제한을 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면,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1년 동안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다. 진정사례

1) 장애인등록증신청에 관한 사례

외국인 K씨 : 저는 외국인 장애인입니다. 한국 국적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장애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도 신청하려 했죠. 하지만 외국 국적의 장애인이란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 장애인은 아무런 배려 없이 그저 비장애인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을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국내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 후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리체계 및 행정적 관리기술상의 문제로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장애인 등록의 허용보다 차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적 성질의 수급권 적격자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공공부조 서비스 지급 시 별도의 심사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장애인 등록조차 불허된 외국인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그 이유를 적어본다.



예시

사회보장은 질병, 노령, 장애, 사망,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복지, 주거,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제한적인 사회보장은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미등록이주민의 생존권²과 건강권, 이주아동·청소년의 교육권, 건강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잃지 않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사회보장은 꼭 필요하다.



문제 풀기

1. 우리나라는 이주민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O, X)
 - 정답 : O
 - 해설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참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2.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O, X)
 - 정답 : O
 - 해설 : 「긴급복지지원법」은 이주민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없다. (O, X)
 - 정답 : X
 -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다.



정리하기

- ◆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확보와 최저 생활의 확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성된다.
- ◆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인 국민연금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어 미등록이주민에게도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노동자를 명시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다.
- ◆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고 의료급여법은 이주민에 대한 규정이 없다.
- ◆ 사회보장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때,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과 결혼이주민, 이주등록노동자와 난민인정자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 외국의 경우 미국은 자국민과 영주권자, 일본은 등록이주민이면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 호주는 영주권자나 영주 예상 이주민도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주민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제14강

다문화 인권교육



1.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념
2. 다문화 인권교육의 국내외 사례
3. 바람직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향

제14강

다문화 인권교육



생각해 보기

다문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적어본다.



예시

다문화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이라기보다는 소수자 집단의 반차별, 평등한 처우를 지칭하는 개념에 더욱 가까워야 한다. 소수자라고 함은 단순히 외국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계층적 소수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은 광의의 인권 교육이요, 반차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타국의 문화를 제한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런 타문화 이해 교육이 교육 대상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될지, 문화에 따른 고정관념을 심화시켜 타문화권에 대한 차별의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학습목표

-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 인권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바람직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념
- 다문화 인권교육의 국내외 사례
- 바람직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향

가. 다문화 인권교육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은 기본권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의식 함양 및 기본적 자유의 강화와 다양한 문화 집단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 및 친선의 증진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모든 국가, 종족 집단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문화 다양성이 이전 사회에 견주어 증가한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과 목적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민족, 인종, 계층, 성별,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실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인권적 관점의 다문화 교육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공존의 원리와 연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다수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관용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기반을 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나.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1) UN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국제 사회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UN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이다. 유엔은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2004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전파, 정보 전달과 관련된 노력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 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유엔은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칙 등에 인

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거나 교육 훈련기관에 인권과정이나 인권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이 인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행동의 격려라는 세 가지 차원인 개념-과정-행동에 걸쳐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교육의 세 가지 차원 중, 첫 번째는 지식 차원으로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 신념, 태도 차원으로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 문화를 제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위 차원은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행위를 격려하는 것이다.

2) 인권학자 리스터(I. Lister)의 인권교육

인권학자인 리스터는 인권교육을 개념-과정-행동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했다.

• 개념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인지적 이해를 의미한다.

• 과정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교육과정 자체에서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 행동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의 제도화와 주류화를 통한 인권취약집단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뱅크스와 배넷의 다문화 교육

이들은 다문화 교육은 문화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함양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 통합 지향 교육이며 민주 시민 양성 교육이라고 정의 한다.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역사, 사회, 행동 과학, 특히 인종 연구와 여성 연구의 목적, 내용, 개념, 원리, 이론, 패러다임을 통합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평등을 증진시키고자 고안된 연구 영역으로서 국민 국가의 경계 내에서 인종, 문화, 언어, 성적 집단, 종교 등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문화 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다문화 교육은 사회통합,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 성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사회통합**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국가, 인종, 민족, 언어, 성, 장애, 계층, 문화, 인권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민주주의**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인정, 관용과 존중, 공존과 협력, 확장된 사회관계에 대한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으로 지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과 임파워먼트를 위한 것이다.

- **다양성과 성찰성**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으로 비판적 태도와 비판적 사고 촉진에 목적이 있으며, 성찰성은 타문화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성 함양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발달로 볼 수 있다.

앞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교육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며, 단순히 타문화 이해 교육으로 제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대상에서 소수자와 다수자를 포괄하며 내용에서 인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민교육이다.

다.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공통점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첫

째 소수자에 대한 반차별, 반편견 교육이라는 점이다. 즉, 두 교육 모두 소수자 문화 존중을 목표로 한다. 둘째, 개념, 과정, 운동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인지적 교육을 넘어 교육 과정 자체가 다문화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육 결과가 당사자들의 문화 다양성 및 인권상황의 개선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제도를 시정하는 교육이지만, 소수자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비주류 소수자 문화 자체를 인정하는 교육이다. 다섯째, 문화권을 넘어 소수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참여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불평등이 최소화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평등함과 다원성이 동시에 증가되고 보장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2)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점

다문화 교육과 인권교육은 어떤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보편성을 강조하고 소수자의 억압된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반면, 다문화 교육은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소수자의 억압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치중한다.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에 방점을 두는 인권과 고유한 문화의 다양성에 방점을 두는 다문화적 접근 방식의 차이는, 때로는 특정한 문화권의 의상, 음식, 종교 등의 평가에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슬람이나 힌두 문화권의 고유한 의상인 차도르나 부르카, 히잡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런 의상의 착용 자체에 대한 논쟁이다. 이런 의상들이 주로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주의자들은 남녀 불평등한 의상 코드라는 점에서 이의 착용을 반대한다. 그에 반해 다문화적 관점에서 이들 의상은 이들 문화권의 고유한 의상 문화로 수용이 가능하다. 앞의 논쟁은 의상 착용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또 다른 논쟁은 학교, 회사, 공공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이들 의상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프랑스와 같은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들 의상의 착용을 불허하는 반면, 캐나다와 같은 다문화주의 국가에서는 이들 의상의 착용은 허용되거나 때로는 이들 의상의 착용이 가능하도록 의상 규정에서 예외를 두기도 한다.

고유 의상 착용에 대한 논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 다양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인권적 문화는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둘째 모든 집단 내부에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모든 개인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문화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문화를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자기결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2 다문화 인권교육의 국내외 사례

가. 해외 다문화 인권교육

캐나다, 미국, 독일과 같은 해외 다문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적 특성은 첫 번째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분명한 기준과 예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인터페이스 종사자들의 경우 소수자들을 직접 접촉하고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해 유대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로, 다분과 학문적인 협력과 공동 작업을 통해 접근한다. 다섯 번째로,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넘어 서로 다른 자각과 인정을 목표로 추구한다.

1) 캐나다

캐나다 공무원 대상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캐나다 토착민의 공공업무 참여’, ‘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길’, ‘공동체 개발을 통한 이민자 통합’, ‘21세기 시민의식의 이론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인종관계 파운데이션의 평등과 반인종차별 기초 과정은 ‘인종차별주의, 이야기해봅시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보기’, ‘교과목을 통한 다문화주의적 반인종차별교육’, ‘수용과 존엄성을 향해서’, ‘다양성의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

미국의 다문화 인권교육의 핵심은 문화 다양성과 평등의 문제와 민주주의 구현의 문제이다. 이는 반인종 차별 금지 교육으로부터 여성, 장애인, 종교, 계층, 지역 집단 등에 대

한 반차별, 반편견, 포용 교육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즉, ‘인종, 종족, 피부색, 출신 국, 혼인 여부, 성, 성적 성향, 종교,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상태, 장애, 이주 상태 등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다양성의 포용을 위한 반차별, 반편견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나. 국내 다문화 인권교육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다문화 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인권친화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비제도화 되어 있으며, 교육자나 강사의 자질 문제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포함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다.

1) 인권적 관점 취약 및 대상의 제한

국내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적 관점이 취약하다는 것과 교육의 대상이 외국인 가운데 다문화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특별학급 구성과 같은 경우이다. 이는 교육 대상에 대한 사회적 분리와 낙인찍기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통합적인 참여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

2) 콘텐츠·프로그램

공공부문, 시민사회, 학교 등 다양한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화되어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유엔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대다수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으며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 이해 교육으로 제한되어 인권 영역과 거리가 있으며, 각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도 다문화 이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다문화 교육에서 인권친화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회통합 분야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 가지 과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적응 지원을 위한 과제**

이민배경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한 초기단계로 한국어 교육이나 공교육 진입 강화,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지도 강화**

이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 및 교류를 증진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CYS-Net을 통한 상담이나 복지와 더불어 진로·진학상담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학교 정보공시를 정착하며, 결혼이민자 학부모 이동복지교사를 채용하고 활용하여 이민배경 자녀들이 낯선 환경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돕는다. 한국어가 서툴 수도 있는 이민배경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확대 배치하여 이중 언어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시한다.

이 과제들은 다문화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문화와 관련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인권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공급자 중심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다문화 인권교육은 개념, 과정, 행동의 세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소통과 교류, 연대감과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피교육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 한국인 강사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4) 비 제도화 및 교육자와 강사의 자질 부족

국내 다문화 교육은 비제도화 되어있어 운영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인 경우가 많아 단계와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결과로 교육 효과의 축적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교육자나 강사의 자질 부족으로

비인격적 처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A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들부터가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인권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므로,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교육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증언했다.

3 바람직한 다문화 인권교육의 방향

가. 국내 다문화 인권교육

1) 인권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

다문화 사회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라는 점에서, 다문화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현행 다문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권 관점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개선이 요청되어진다. 이에 따라 다문화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인권교육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대상의 확장

모든 소수자 집단과 주류 사회 전체를 포함하기 위한 대상의 확장이 필요하다.

3)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시 단순한 문화의 이해가 아니라 반차별·반편견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4)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준에 행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수법을 지양하며, 수요자 중심의 참여자 교육을 통해, 소수자 고유문화에 대한 긍정적 정체감 함양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자체가 이주민과 선주민사이의 소통, 교류, 연대가 활성화되는 장이어야 한다.

5) 제도화 모색

여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의 포괄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화의 가장 중요한 형식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인권교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6) 강사의 자질 함양

다문화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앞서 나왔던 제도화 모색과 더불어 강사의 자질 함양도 중요하다. 실제 다문화 인권교육을 전달하는 위치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의 전문화 및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7) 인권친화적인 내용

인권교육의 원래 목적인 인권친화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8)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 사항

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과정, 행동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개념적 측면은 이주민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가, 과정적 측면에서는 다문화와 인권의 감수성이 제고되고, 행동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인권 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문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인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다문화 사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 인권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NGO, 해외 인권교육전문기관과의 협력 방식이나 수단을 모색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인권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분야와 대상 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자료의 개발과 더불어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사회의 반인종차별 인권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 관계자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이주민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점점 더 빨라지면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특히 강사단 보수교육을 통해 유엔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인권 강사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을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다문화가 인권 문제임에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틀이 될 인권 관점과 인권 내용이 없다는 것,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자체가 거의 부재하며, 교육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교육자나 강사의 자질 문제, 경우에 따라 내용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문제 풀기

1. 다문화 교육과 인권교육은 같은 것이다. (O , X)

○ 정답 : X

○ 해설 : 인권교육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보편성을 강조하며, 다문화 교육은 개별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2. 다문화 인권교육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시켜 우리나라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O , X)

○ 정답 : X

○ 해설 : 다문화 인권교육은 내국인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도 단순히 타 문화 이해 교육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소수자와 다수자를 포괄하며, 인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민 교육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O , X)

○ 정답 : O

○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업담당자들을 위한 ‘인권감수성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기

- ◆ 문화 다양성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과 목적이 강화되고 인권의식과 관용 정신 함양을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 ◆ 여기에서 인권교육이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며, 다문화교육이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통합 지향 교육이라 할 수 있다.
- ◆ 인권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둘 다 소수자 문화 존중을 목표로 하지만, 인권교육은 인권에, 다문화교육은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 ◆ 해외의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 캐나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세 나라는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넘어 서로 다름의 자각과 인정을 목표로 추구한다.
- ◆ 국내 다문화 교육은 인권 관점과 인권 내용이 부재, 대상의 제한, 인권 친화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공급자 중심 교육과 인권 침해적 요소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을 인권 관점에 기초한 인권교육으로 전환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교육대상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전환하여 인권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개념, 과정, 내용이라는 3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문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제15강

권리구제 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2.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제도
3.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제15강 권리구제제도



생각해 보기

경찰관들은 병원으로부터 찬드라가 네팔인으로 보인다는 연락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상황에서 연고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찬드라를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게 만들었다. 찬드라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지 의견을 적어본다.



예시

1992년 외국인 산업 연수생으로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다 행려자로 오인되어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혔던 찬드라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경찰관들이 병원으로부터 찬드라가 네팔인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두 차례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상황에서 ‘네팔공동체’ 등 연고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국가는 정신적 위자료 2,500만 원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의 경우에 재판을 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기관,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등의 인권침해로 진정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학습목표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제도
-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이주민이 우리나라 입국부터 출국까지 동안에 출입국, 체류, 근로 등에서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등을 규정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진정접수 및 처리절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진정은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조정에 따른 권고, 기각, 각하 등의 위원회 의결 후 당사자 통보 순으로 접수 및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1) 인권상담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1로 가능하다.

2) 진정접수

진정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 면전진정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진정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진정은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벌인 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과로 배당된다.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정한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3) 담당 조사관의 조사

조사과로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장소·시설·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소관 소위원회의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4) 조정

진정이 제기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관 소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정이란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 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관의 조사 또는 소관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돌아간다.

5) 위원회 의결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로 구분되는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내용이나 긴급구제요청 사안의 심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

소관 소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이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조사내용을 심의하면서 조사부서에 추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전원위원회 상정을 결정한 사건은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6) 사건처리결과 통보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한다.

2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제도

이주민이 고용이나 근로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진정·고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했을 때,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이다.

이주민이 근로에 고충을 겪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지청에 진정·고소를 하게 되면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원실에서 상담 및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한 뒤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결과 법 위반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한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3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제도

가. 구제신청

1) 구제신청사유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처벌을 당한 이주민 노동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구제신청 처리 절차

구제신청처리는 구제신청, 사실조사, 심문회의를 거쳐 심판위원회 판정 후 당사자에게 판정서가 통보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3) 구제신청 방법

구제신청은 이주민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면 되는데,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이나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구제사건의 처리와 심문회의 개최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사건은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주민노동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업주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해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다. 구제사건의 처리기간과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 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 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재심 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 추가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보기

이주민노동자가 전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본다.

Blank area for writing answers to the reflection question.



예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다가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청의 진정조사를 거쳐 보증보험과 체당금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과 체당금은 노동자 임금의 전액을 보장하지 않고 일부분만 지급함으로써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문제 풀기

1. 회사 내에서 동료 남성노동자가 자꾸 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몸매 죽이지 않아?’ 라는 말을 하여 이주여성 A는 “그만하라” 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 그러나 동료 남성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을 경우 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진정할 수 있다. (O, X)

○ 정답 : ○

○ 해설 :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 때문에 고용상의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2.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와 동티모르 노동자 B는 회사로부터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와 B가 체불된 임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O, X)

○ 정답 : ○

○ 해설 :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근로개선과에 신고(진정)하여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3. 이주노동자가 사업주가 근로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벌을 했다고 생각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부당한 징벌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이후 이주노동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O, X)

○ 정답 : X

○ 해설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한다.



정리하기

- ◆ 국가인권위원회 : 이주민이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구제청구는 인권상담, 진정접수, 사건조사, 조정, 권고·기각·각하 등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 고용노동청 : 이주민이 고용이나 근로에 고충이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청에 상담하고 진정·고소를 할 수 있다. 민원실에서 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뒤, 당사자 출석 요구, 사실조사, 사실조사 후 법 위반 발견 시 사업주에 시정지시, 시정지시 불응 시 사법처리의 과정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 ◆ 노동위원회 : 이주민이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제신청, 사실조사, 심문회의, 심판위원회 판정, 당사자에게 판정서 통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 인 쇄 | 2017년 9월

| 발 행 | 2017년 9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51 | F A X | (02) 2125-09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553-4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